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607호 2019. 04. 04.(목)

조례

- 사천시 조례 제1560호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561호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33
- 사천시 조례 제1562호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563호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39
- 사천시 조례 제1564호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사천시 조례 제1565호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사천시 조례 제1566호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사천시 조례 제1567호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3
- 사천시 조례 제1568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 사천시 조례 제1569호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규칙

- 사천시의회 규칙 제37호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63
- 사천시의회 규칙 제38호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5

고시

- 사천시 고시 제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77
- 사천시 고시 제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78
- 사천시 고시 제7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79
- 사천시 고시 제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80
- 사천시 고시 제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81
- 사천시 고시 제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 82
- 사천시 고시 제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 83
- 사천시 고시 제82호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 고시 ----- 84

공고

- 사천시 공고 제69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 85

회 람										
--------	--	--	--	--	--	--	--	--	--	--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5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조례 제156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중 “단체” 를 “법인·단체” 로 한다.

제4조 제목 “(이해관계 직무의 해피 등)” 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제6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의원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전 심의 등” 이라 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장 및 자신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원은 스스로 안전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1. 의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2. 의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3.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4.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5.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6.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가.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의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5백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8.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안전심의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 ② 의원이 직무 수행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의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으면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해당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그 의원을 안전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본회의 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결의 대상이 된 의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회피,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결·의견 제출 등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607호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말하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4조의3(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2. 의회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의회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의회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의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의장은 의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원에게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의4(가족 채용 제한) 의원은 의회, 사천시 및 사천시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의원은 사천시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사천시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중 “사천시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의회”로 한다.

제7조제2호 중 “친족”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소속 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사 천 시 공 보

제607호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9조제2항 중 “정보와 관련한” 을 “직무의 범위를” 으로 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2(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사천시 또는 사천시의 산하기관에 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사천시 또는 사천시의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1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 을 “별지 제5호 서식” 으로, 제12조제1항 단서 중 “별지 제3호서식” 을 “별지 제6호 서식” 으로, 같은 조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 을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제13조제2항 본문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및 같은 조제4항 중 “별지 제5호서식” 을 “별지 제8호 서식” 으로, 같은 조제7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9호 서식” 으로, 제14조제1항 중 “별지 제7호서식” 을 “별지 제10호 서식” 으로, 제15조 중 “별지 제8호서식” 을 “별지 제11호 서식” 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 ①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의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의원 자

사 천 시 공 보

제607호

신의 직무관련자였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이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였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의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에게 안전심의등 직무를 회피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친족” 을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지 제10호서식” 을 “별지 제13호 서식” 으로, 제20조제1항 중 “별지 제11호서식” 을 “별지 제14호 서식” 으로, 같은 조제3항 중 “별지 제6호서식” 을 “별지 제10호 서식” 으로, 같은 조제5항 각 호열기이외의 부분 중 “별지 제12호서식” 을 “별지 제15호 서식” 으로, 같은 조제5항제3호 중 “별지 제13호서식” 을 “별지 제16호 서식” 으로,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같은 조제6항 “별지 제14호서식” 을 “별지 제17호 서식” 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20조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를 삭제한다.

제25조제3항중 “제23조” 를 “제24조” 로 하고, 제30조제1항 중 “의정업무담당” 이 “의정업무팀장” 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이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 별표 2,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17호 서식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1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3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별지 제1호 서식] (제4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	-----	--

신고인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직무	(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 ※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	--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제5항 관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현황

접수번호	접수일	
------	-----	--

해당 의원	성명	
	소속위원회	
	연락처	

관련 사항	<p>관련 직무(1. 의안 심사, 2. 예산 심의, 3. 행정사무 감사·조사, 4. 기타)</p> <p>※ 신고 원인이 되는 직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예 : 의안명 등)</p> <hr/> <p>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 관계사업자, 7. 기타)</p>
안건심의등 회피여부	<p>※ 미회피 시 그 사유(소명 내용)를 기재</p>
본회의(상임위) 의결사항	
해당 의원 의견	
기타 참고사항	

20 년 월 일

, 확인점검자 (인)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별지 제4호 서식] (제4조의2제1항 관련)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제1호)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제2호)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 타					
기타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신고자 :					(인)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별지 제6호 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국내외 활동 사전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신 청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목적	
------	--

활동사유 및 경과	
-----------	--

지원받은 내역 (지원기관별)	
--------------------	--

활동기간	. . . ~ . . . (일간)
------	---------------------

활동지역 (방문기관)	
----------------	--

참 가 자	소속 위원회	직위	성명	정당	활동경비	
					금액	부담기관
	합계		명		천원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별지 제7호 서식] (제12조제2항 관련)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의원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	--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별지 제9호서식] (제13조제7항, 제20조제3항 관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	--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	--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별지 제11호 서식] (제15조 관련)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의회명)의원 행동강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별지 제13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	------	------	------	-----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동의 [] 부동의
---	-------------------

신고취지 및 이유	
-----------	--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	-----------

비고	
----	--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별지 제16호 서식] (제20조제5항제3호 관련)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조례 제156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사천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
 - 가. 부양의무자가 없는 노인
 - 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 다.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혼자 사는 노인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6. “생활관리사”란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생활교육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607호

2.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생활관리사 지원
3. 고독사 위험노인의 거주공간에 대한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등 안전확인 장치의 설치 및 관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홀로 사는 노인 중 고독사 위험노인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노인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응급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조례 제156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사천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 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천시(이하 “시” 라고 한다)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
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

제5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한 물품 중 그 품목과 물량을 정하여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 ① 시장은 시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및 수출을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공공단체, 체육시설 등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조례 제156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 중 “국가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4조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호 중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2제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1항”을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가”를 “시가”로 한다.

제8조 중 “사천시장”을 “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 중 “사천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를 “「사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조례」”로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몰군경유족, 전상·공상군경 및 그 유족, 순직군경 유족, 무공·보국 수훈자 및 그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 유족,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및 그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및 그 유족,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및 그 유족으로 한다. 다만, 전몰군경 유족은 참전명예수당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제15조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징수”를 “보훈명예수당을 환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조례 제156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25전쟁” 이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2조제1항” 을 “제2조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제2조제2항” 을 각각 “제2조제2호” 로,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제2항제4호 중 “(미망인이” 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월 8만원” 을 “참전유공자
에 대한 명예수당은 경상남도과 시의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 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
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조례 제156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사”란 시의 본청 및 읍·면·동·사업소·시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2. “관사”란 시장 및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3. “문화예술공간”이란 청사 내에 공연, 강연, 집회 및 전시 등의 활동이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가능하도록 조성된 강당, 공연장, 전시실 등을 말한다.

4. “문화예술공간의 사용” 이란 제3호의 시설을 공연, 강연, 집회 및 전시 등의 활동에 사용하거나 방송,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제11조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청사 공간 중 대회의실(부대시설 포함)의 사용허가는 사천시의회 의원 본인 또는 자녀와 시 소속직원 본인과 그 자녀의 결혼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등 후생복지를 위한 경우에 한한다.
- ④ 제3항의 사용허가와 관련된 절차 등은 이 조례 제4장을 준용하며, 사용료는 별표 4를 따른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별표 4】

사천시 대회의실 사용료

1. 기본시설

시 설 명	기 준	사용료(원)	비 고
대회의실	1일 (09:00~18:00)	100,000원	결혼예식장 사용시
	오전 (09:00~13:00)	50,000원	
	오후 (13:00~17:00)	50,000원	
	야간 (18:00~22:00)	100,000원	

2. 부대시설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방송 및 조명 (음향일체)	1회	10,000	1. 주차장 사용 가능 2. 기본비품 사용 가능 (접수대, 축지대, 사회대 등)
신부대기실	1회	10,000	
폐백실	1회	10,000	
구내식당 (조리실제외)	1회	10,000	
냉·난방	1회	10,000	

※ 상기 이외의 예식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 등은 사용자가 확보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조례 제156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전부 제한지역은 별표 1과 같다” 를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을 “제2항”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전부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다음 각 목의 가축

가. 소, 말, 젖소, 돼지 : 모두 합하여 5마리 이하

나. 개, 사슴, 양(염소 등 산양 포함) : 모두 합하여 10마리 이하

다. 닭, 오리, 메추리 : 모두 합하여 20마리 이하

6. 일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대상 규모 미만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제3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일부제한구역에서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을 수립·운영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축종의 변경 없이 기존 가축 사육시설의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하는 경우(다만,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2항” 을 “법 제28조제1항” 으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법 제26조제4항” 을 “법 제26조제5항”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단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및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별표 1]

가 축 사 육 제 한 구 역 <제3조 관련>

1. 전부제한구역

- 가.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 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 라.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 마.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의 인가로부터 다음 각 목의 제한거리 이내의 지역

가. 소 : 100m

나. 젖소 : 200m

다. 돼지, 개, 가금류(닭, 오리 등) : 700m

라. 그 밖의 말, 사슴, 양, 염소 등은 “소”의 제한거리 규정을 따름

※ 적용기준

가. “제한거리”는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부지 경계선에서 가축사육시설 예정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서 지적도 또는 임야도 상 거리로 산정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별지 제4호서식]

가축분뇨 수거 현황 일계표 (제8조제2항 관련)

○ 업체명 :

○ 수거일자 : 200 . . . (. . . 요일)

구분	수거농가 현황			수거량 (ℓ)	수거요금(원)			전화 번호	비 고
	농가명	대표자 (남/여)	주 소		계	수수료	사용료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조례 제156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력(資力)으로 지원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를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 중 “영 제4조제2항” 을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 으로, “고시” 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 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며, 제5조 및 제6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 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도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전의 제5조)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 를 “원인제공자” 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제1항 중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 을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 으로,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재난피해자는” 을 “피해주민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 중 “재난피해자가” 를 각각 “피해주민이” 로, 같은 항 중 “재난피해자” 를 “피해주민” 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관리하고” 를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으로 한다.

제9조(중전의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6항” 을 “제8조제6항” 으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 본문 중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 를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 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재난피해자” 를 각각 “피해주민” 으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 중 “제6조제6항” 을 “제8조제6항” 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를 “지원한 자금이나 물품이” 로,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을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으로 한다.

제12조(중전의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뒤쪽)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천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활용 동의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사천시장이 용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사천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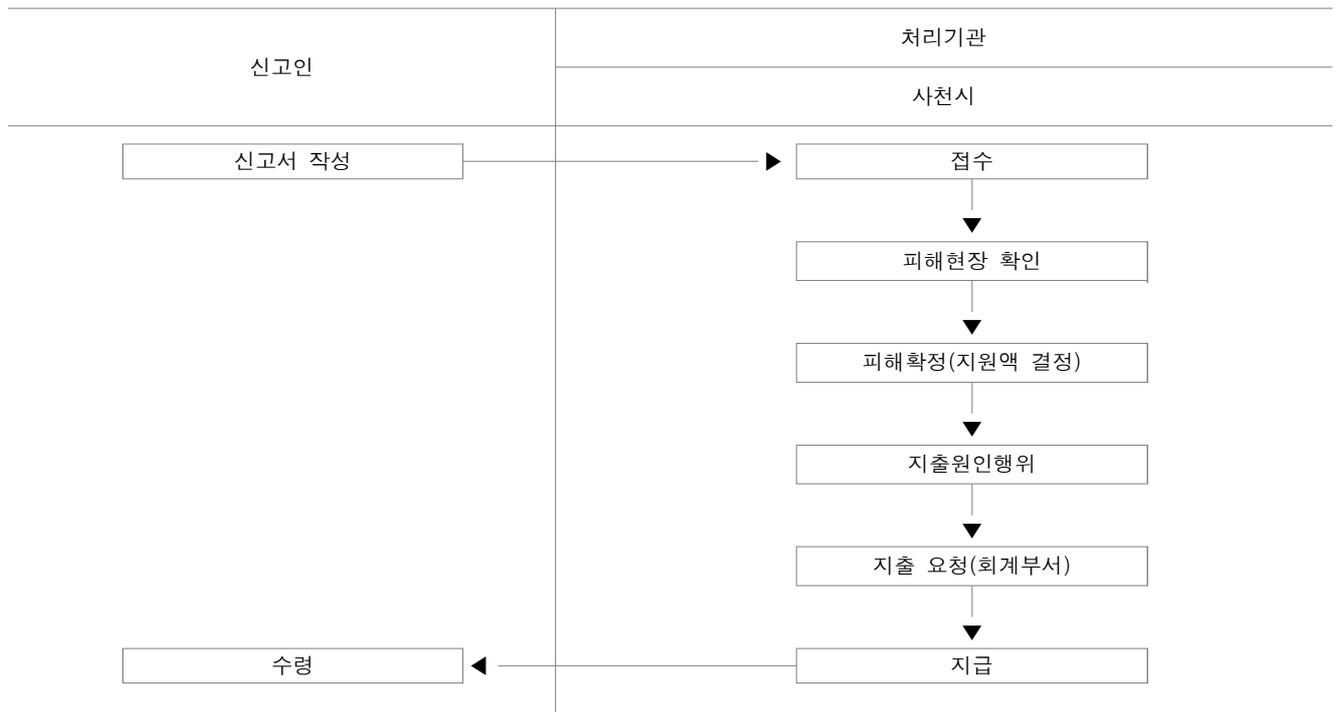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애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물/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조례 제156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1호 중 “300미터” 를 “500미터”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호이상” 을 “5호 이상” 으로, “300미터” 를 “500미터” 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 경사도가 15도 미만으로 15도 이상 토지의 비율이 20% 이내일 것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하나의 필지에 둘 이상을 나누어 허가할 수 없음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제48조의2제1항 단서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16년” 을 각각 “2020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조례 제15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사천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를 “사천에어쇼”로,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를 “사천에어쇼 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추진위원회”를 “사천에어쇼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추진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이하 “엑스포” 라 한다)” 를 “사천에어쇼” 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어” 를 “받아” 로 한다.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엑스포” 를 각각 “사천에어쇼” 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9조 중 “엑스포” 를 “사천에어쇼” 로 한다.

제12조 중 “대하여” 를 “대해서” 로 한다.

제13조 중 “운영에 관하여” 를 “운영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의회규칙 제3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이 삼 수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에 따른 사천시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전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는 4명 이상과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의회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원외출장 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공무원외출장은 심사대상이 된다.

⑦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위촉 해제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⑨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심사기준) 공무원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업무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다만 이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편성이 가능하나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 (제5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별지 제1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위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위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3. 출장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식 비	숙박비			
계							

4. 출장효과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별지 제2호 서식]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1) 겉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사천시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의회규칙 제3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4월 4일

사 천 시 의 회 의 장 이 삼 수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9조의2(조례안예고) ① 의장은 조례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라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예고를 할 때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하 “의견제출자”라 한다)으로 하여금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접수하여 소관 위원회에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서면으로 알리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의견제출자의 의견을 해당 조례안의 심사에 참고하여 그 결과 반영된 사항과 그러하지 아니한 사항을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의장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견제출자에게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31조의 제목 “의안이 이송” 을 “의안의 이송” 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개의일시” 를 “개회일시” 로 한다.

제54조 중 “개의 ” 를 “개회”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7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4. 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8-1호 (2018.02.14.)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선전지구 연안정비사업(호안침식방지)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서포면 선전리 897-5번지선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19.03.21.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7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4. 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7-2호 (2017.06.19.)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어촌체험장조성)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실안동 1129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19.03.26.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74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4. 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17-3호 (2017.07.17.)
2. 점용·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도시재생과장)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공사 내용
 - 송포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어촌체험장조성)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공유수면
5. 공사완료 신고수리일자
 - 2019.03.26.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 2019-76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4. 0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01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3월 19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선박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형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실안동 1096-38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108㎡(직접 : 52.2, 간접 : 55.8)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년 3월 19일 ~ 2034년 3월 18일(1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7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4. 0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02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3월 19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선박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형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늑도동 502-13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115.2㎡(직접 : 60.0, 간접 : 55.2)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년 3월 19일 ~ 2034년 3월 18일(1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7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승인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4. 0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03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3월 19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선박 안전관리 및 접안에 필요한 PE 부잔교형 접안시설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송포동 1526-15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167.41㎡(직접 : 90.98, 간접 : 76.43)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9년 3월 19일 ~ 2034년 3월 18일(15년간)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해양수산과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7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9. 04. 04.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 : 제2019 - 4호
2. 점용·사용 승인 연월일 : 2019년 03월 26일
3. 점용·사용의 목적
 - 당초 : 쇄빙탑
 - 변경 : 쇄빙시설, 선박접안 및 매표소 설치
4. 점용·사용의 장소
 - 경남 사천시 대방동 728번지선
5. 점용·사용의 면적
 - 당초 : 1,475㎡(직접 : 990, 간접 : 485)
 - 변경 : 294㎡(직접 : 294, 간접 : -)
6. 점용·사용의 기간 : 2011.01.01.~2026.12.31.
7.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가. 성 명 : 사천시장
 - 나.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고시 제2019-82호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의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해 2019년도 사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실안3지구, 죽림2지구)의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3일

사 천 시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 사천지사
2. 사업지구 명칭 : 실안3지구, 죽림2지구
3. 사업지구 위치 및 면적

연번	소재지	지구명	필지수	면적(천㎡)	비고
합계			129	48	
1	사천시 실안동 1113-2번지 일원	실안3지구	104	32	
2	사천시 죽림동 414-3번지 일원	죽림2지구	25	16	

4. 대행 업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토지이용현황조사 등
5. 기타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사천시 공고 제2019-69호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재난관리실태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따라, 우리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 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업무 등) 및 운영성과 등을 알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자율과 책임행정 강화로 재난관리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공고 합니다.

2019. 03.

사 천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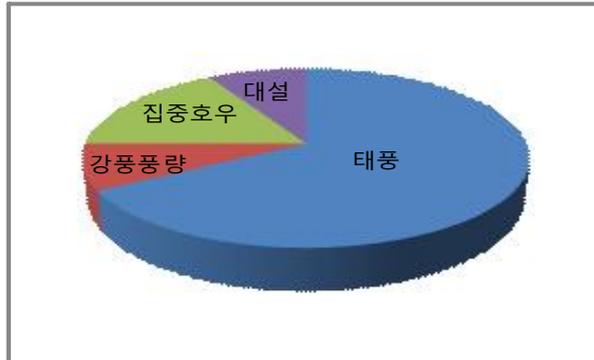
1. 재난관리 실태 공시 총괄

◆ 전년도에는 자연재난(태풍)이 발생하여 피해 및 복구사항이 있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해 제25호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사유재산(농경지)과 공공 시설물에 14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제7호 태풍 “쁘라삐룬”, 제14호 “야기”, 제19호 “솔릭”, 태풍 4건의 간접 영향이 있었습니다.
- 2018년 태풍 “콩레이”에 의한 복구비는 14건에 5억 9백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최근(2012년)태풍 중 “블라벤”과 “산바”에 의한 피해액이 103백만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실적으로

- 재난에 대응할 조직은 1과 4담당 20명으로 지난해와 같이 유지하고, 방재안전직렬 공무원 3명이 있으며, 각종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는 관내에 9종 71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장비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5개소(교체5)등 재난경보 시설을 확충 하였습니다.
- 재난안전관련분야 전문성 교육은 37개 과정 73명이 전문성교육을 이수 하였고, 지역자율 방재단 108명과 지역주민 740명이 재난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하여 시민안전 봉사대원 및 시민 등 3,360명이 매월 1회 안전점검의 날 행사 및 캠페인을 12회 실시하였고, 사고예방 리플릿 및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정비지정 사항으로

- 재난방지시설을 위한 예산을 38,714백만 원으로 농업용수개발 정비 사업 등 41개 각종 재난 관련 정비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 · 인력의 지정사항으로

- 재난관리자원의 비축을 위한 방재물자는 7개 종류, 의료시설 14개, 병원 병상수 2,998개, 수용시설 73개소 14,43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지진대피 시설은 20개소 69,92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장비는 구조장비 4종 390대이며, 복구장비 7종 87대, 의료방역·재난현장 환경정비 장비는 4종 5,187대, 제설 장비 4종 9대, 기타 4종 19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기술인력은 8개 분야 232명, 기능인력은 9개 분야 700명이 확보되어 있으며, 자원 봉사단체는 의용소방대, 적십자 봉사대 등 2,645명의 인력자원이 있습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적립은 당해년도 확보기준액(618백만원) 보다 초과 확보.

- 2018년 법정적립액 618백만원, 실질 적립액은 1,146백만 원으로 185% 상향 적립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2018년도에 71건, 1,115백만 원을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에 사용하였음.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자연대책법」 제75조의 2에 따른 지역안전 진단결과 4등급으로 지난 해보다 2단계 높은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 그 밖에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은 149시설 중 80개 시설에 대하여 내진 성능 확보 또는 내진보강이 완료되어 54%의 내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9년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시설물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효율적인 내진보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난대응 제고를 위하여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지진대피 훈련, 지역특성화 주민참여형 재난대비훈련 등을 언론과 시홈페이지, 포스터, 전광판, SNS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계속 수정 및 보완작업중에 있으며, 우리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5개의 재난유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우리 시의 재난관리역량은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 체계, 안전관리 규정, 재난 관리자원확보, 시민안전 체감도 제고를 위한 안전정책 강화, 현장중심의 선제적 안전점검 강화, 안전관리지원 제도적 기반 확충, 시민안전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 지역안전도 진단, 재난안전기금 적립, 재난발생에 대비한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국가안전대진단등 사람중심, 생명 중심의 안전 사천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 지진대비 공공·사유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 복합재난 등 중점적으로 관리 및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것 입니다.
- ◆ 사천시에서는 재난관리를 위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안전 「ZE RO화」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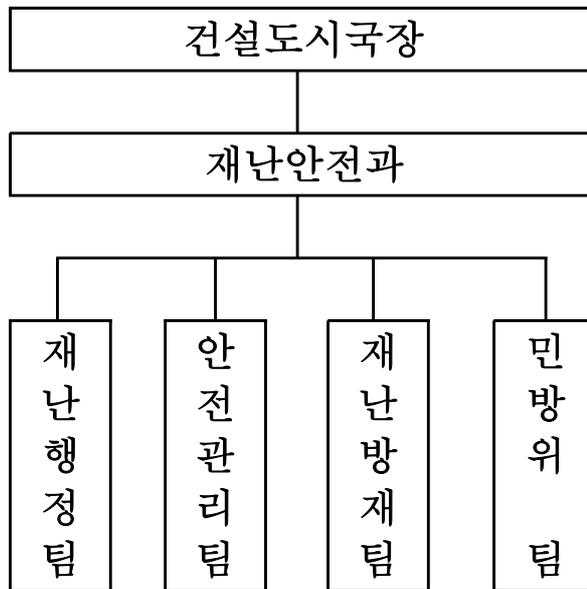
1. 재난관리 실태 세부 공시

가.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현황

일 시	재난(피해)원인	피해내용	복구내용	추진사항
	해	당	없	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실적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가) 기구



나)인원

2018.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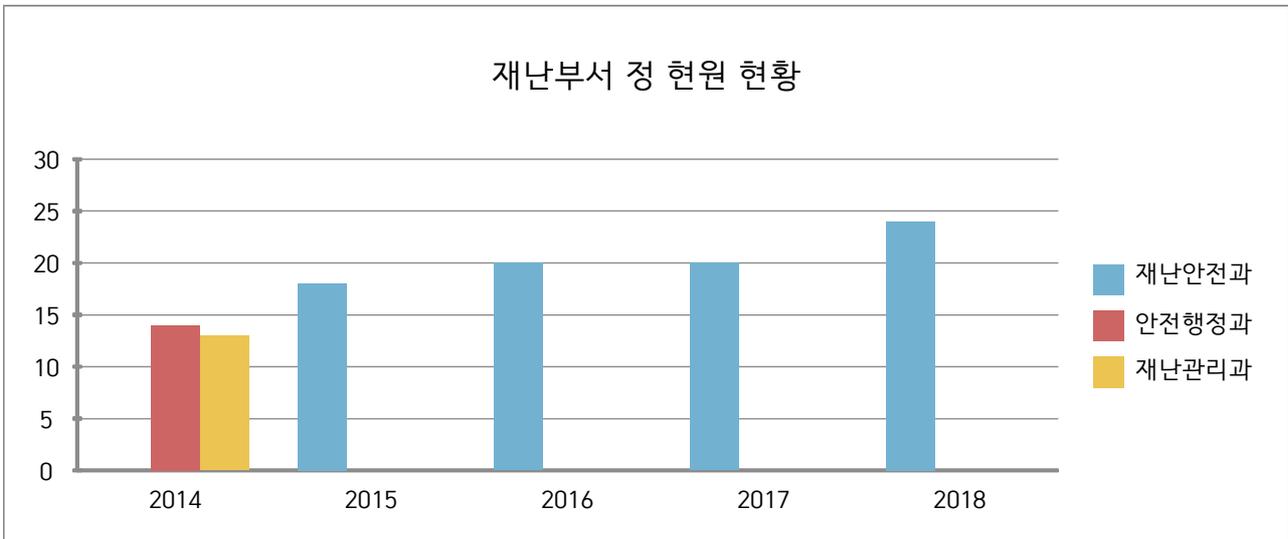
구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기타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원	24	24	1	1	6	6	5	5	청원경찰 3명	
현원	24	24	1	1	6	6	5	5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27	18	20	20	24
재난안전과	일반직 현원	-	18	20	20	24
안전행정과	일반직 현원	-	-	-	-	-
재난관리과	일반직 현원	-	-	-	-	-



☞ 일반직 및 기능직 현인원의 증감원인

- 자연재난 등 복잡 다양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천시에서는 2018년 현재 방재안전직 3명을 채용하였으며, 자연·사회재난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안전직이 업무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복잡 다양한 재난에 대응키 위해서 전문직(방재안전직)을 추가 채용이 필요한 실정임.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2) 재난의 예측 및 정보전달체계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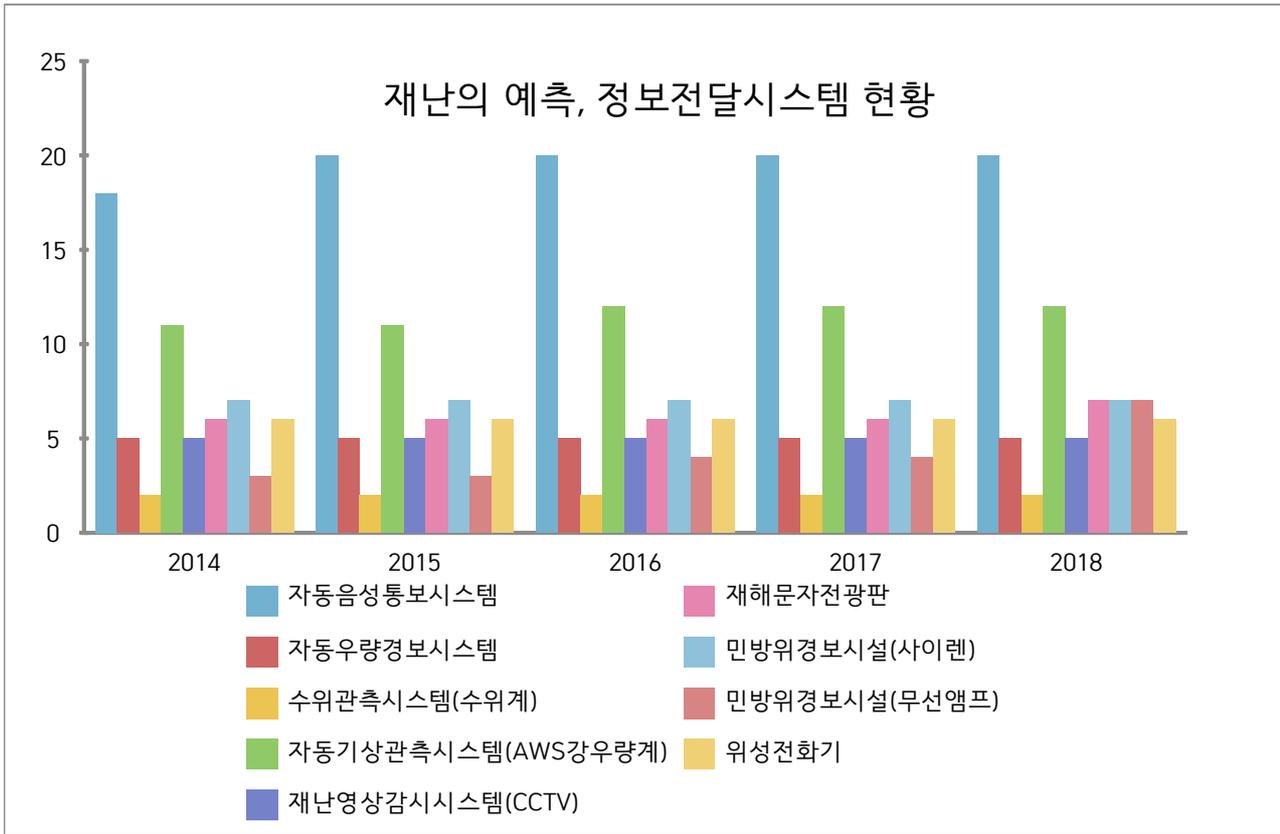
구 분	개 소	설 치 장 소
계	7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0	소곡·수청·능화·용소·우천·가산유원지, 하탑, 서부시장, 삼천포유람선, 신수, 신도, 마도, 저도, 팔포(2), 구항만, 남일대해수욕장, 용두공원, 동서동, 신수도
자동우량경보시스템	5	상황실(2), 백천재(1), 백천계곡(2)
수위관측시스템(수위계)	2	대진교, 사천교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강우량계)	12	정동, 용현, 사남, 축동, 곤양, 곤명, 서포, 벌용, 향촌, 남양, 신수출장소, 사천읍보건지소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	동계제방, 가화제방, 문화원앞, 당천마을, 가산교
재해문자전광판	7	용소유원지, 남일대해수욕장, 백천계곡, 다솔사, 정동수청마을, 팔포지구, 축동지구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7	사천읍, 사남면, 용현면, 곤양면, 청녘공원, 벌용동, 남양동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7	축동면, 중앙시장(선구동), 향촌동, 정동면, 곤명면, 곤명면보건지소, 서포면
위성전화기	6	재난안전과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63	65	67	67	71
자동음성통보시스템	18	20	20	20	20
자동우량경보시스템	5	5	5	5	5
수위관측시스템(수위계)	2	2	2	2	2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 강우량계)	11	11	12	12	12
재난영상감시시스템(CCTV)	5	5	5	5	5
재해문자전광판	6	6	6	6	7
민방위경보시설(사이렌)	7	7	7	7	7
민방위경보시설(무선앰프)	3	3	4	4	7
위성전화기	6	6	6	6	6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설치 확대

- 재난 예·경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370백만원으로 농어촌지역 재난 경보·방송 장비확대 민방위경보시설, 기상관측 장비구축 등으로, 관내 주요 지점 기상관측 정보를 실시간 확인으로 다양한 재난 정보자료로 활용함.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에방에 관한 홍보

가) 재난업무담당공무원 교육 실적

과 정 명	기간	교육기관	인원
계		37과정	73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제4기 재난관리책임기관책임자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제3기 재난관리평가과정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명
지진화산 재난대비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안전점검 실무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명
제3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제1기 재난관리실무과정	3	경남 인재개발원	3명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매뉴얼 및 훈련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저수지 댐 안전관리자 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제2기 재난관리실무과정	3	경남 인재개발원	1명
제1기 재난구호심리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명
제2기 재해복구실무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제1기 재난통신망운영관리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관리통합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관리자과정	1	경남 인재개발원	5명
재난안전관리신규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제3기 NDMS 재난관리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국민안전문화교육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과 정 명	기간	교육기관	인원
제3기 재난관리실무과정	3	경남 인재개발원	4명
재난관리매뉴얼 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통신망운영관리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대규모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교육	2	해양환경공단	2명
제2기 재해복구실무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2명
저수지 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과정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교육원	3명
재난관리책임기관관리자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해예경보시스템과정	2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NDMS 재난관리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감염병관리 및 위기대응과정	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명
재난의료대비대응과정	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명
지역안전지수관리과정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정부합동 가축질병 권역별 교육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3명
제4기 재난관리실무과정	3	경남 인재개발원	4명
지자체 배수펌프장 관리 담당자 교육	1	경상남도	1명
재난관리통합과정	3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현장드론활용과정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1명
재난안전분야 국정과제 공유과정	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4명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나) 지역자율방재단 재난관리 교육·훈련

일시	장소	참석인원	내 용	주관	비고
계		89명			
2018 .1. 19.	방재단사무실 (정동면)	20	- 2018년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 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사천시	
2018 .3. 29.	사천시청 민방위교육장	40	- 응급 처치법 - 소방 안전 교육 등	사천시	
2018. 12. 12.	노산공원급경 사지의 3개소	29	- 동절기 재난 취약 점검 -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	사천시	

다) 재난관리에방을 위한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훈련

교육/훈련명	일시	장소	참석인 원	내 용	주관
계			5,250		
화재 대피 훈련 (시범훈련)	2018.3.21	향촌동	100	재난발생시 재난 훈련	사천시
지진 대피 훈련(민방위)	2018.4.16	시전역	1,800	지진 현장 훈련	사천시
시청사 화재대피훈련	2018.5.10	시청	500	지진 현장 훈련	사천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2018.5.14	BAT	350	지진 대비 현장 훈련	사천시
산사태 대비· 대응 훈련	2018.5.17	곤명면	40	산사태 현장 훈련	사천시
생물테러대비·대응 훈련	2018.9.14	벌용동	130	생물테러현장 훈련	사천시
도단위민방위 훈련	2018.9.18	선구동	250	지진 대비 현장 훈련	사천시
수질오염사고방제 훈련	2018.11.16	정동면	80	수질오염 현장 훈련	사천시
화재 대피 훈련	2018.11.27	시전역	2,000	화재 현장 훈련	사천시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계	554명	831	733	926	5,412
방재담당공무원 전문성 교육	34	75	114	78	73
지역자율방재단교육·훈련	31	93	69	108	89
지역주민교육·훈련	489	663	550	740	5,250

☞ 교육·훈련 참석인원 증감원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필수교육일수를 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재난관련부서 근무자들의 전문성 강화 교육 확대 및 시민 및 지역자율 방재단 교육·훈련 실시하여 재난발생시 사고수습 활동 지원을 위한 역량 제고.

라) 안전모니터봉사단 활동실적

◆ 교육·훈련 실적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내 용	주 관	비 고
3.29 14:00	사천시청 민방위교육장	30명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사 천 시 사천소방서	

◆ 제보·처리 실적

봉사단원(인원수)	제보실적(건)	처리실적(건)			비 고
		완료	진행	불가	
170	14	14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마) 재난관리 관련 홍보실적 [(안전점검의 날 행사, 캠페인 등)]

연번	행사명	주요내용	장소	참석인원	비고
	계			3,128	
1	1/4분기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어린이안전사고 예방 외 다수	동성초등학교 앞 외 26개교	560	
2	2/4분기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여름철대비 물놀이시설 점검 등 외 다수	우천마을 외 4개소	1,215	
3	3/4분기 안전 점검의 날 행사	행락철 안전사고예방 및 7대 안전무시관행근절 홍보 외 다수	사천시청 앞 축제행사장 외 15개소	736	
4	4/4분기 안전 점검의 날 행사	동절기화재예방 홍보 외 다수	삼천포 중앙시장 외 5개소	617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언론 보도 및 기고실적(신문, 방송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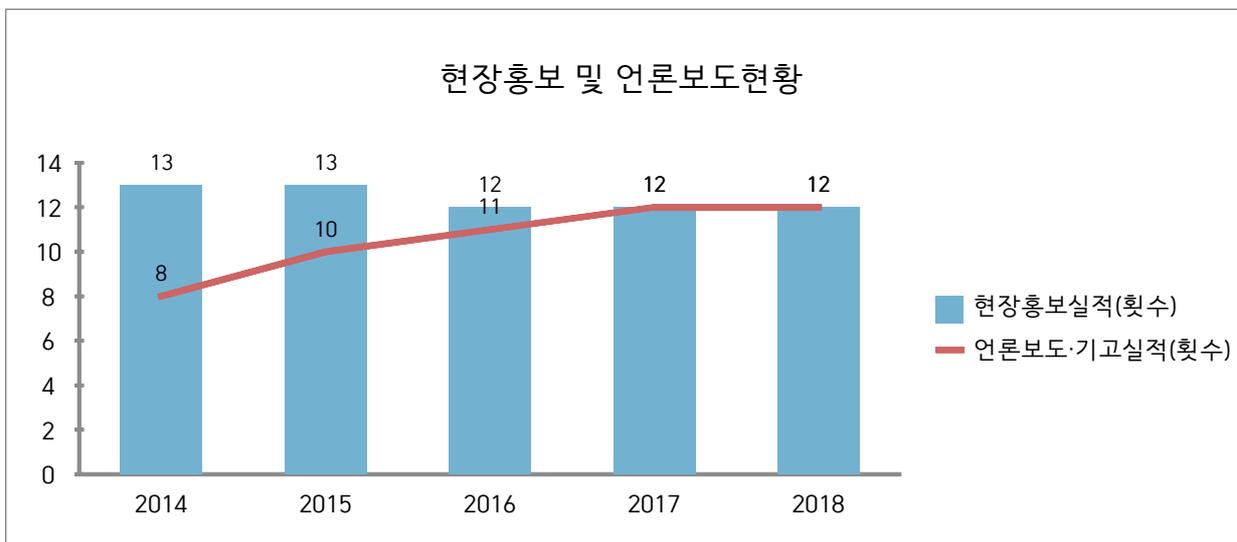
연번	기사제목	주요내용	보도일자	언론사	비고
1	비토 해양낚시공원 ·비토국민여가캠핑장조성 사업 현장행정	취임식후 안전점검 및 주요 사업장 방문	2018. 1. 11	경남뉴스투데이	
2	사천시 산불방지대책 특별 수립	사천시 산불 예방 총력 대응	2018. 2. 22	사천인터넷뉴스	
3	사천시 국가안전대진단 현장 점검	사천시 국가 안전대진단 행정력 집중 과 사전 예방 점검	2018. 03. 07	경남뉴스투데이	
4	사천시,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사천시 만관군 합동 수양초등학교입구 도로변 안전문화운동 캠페인 전개	2018. 03. 08	사천인터넷뉴스	
5	사천 바다케이블카 현장 방문	사천바다케이블카 개통대비 최종점검 마무리	2018. 04. 10	사천인터넷뉴스	
6	사천시 박성재 부시장 폭염대비 현장 긴급점검 실시	폭염 현장 동서금동 개발등 경로당 및 무더위 쉼터 방문	2018. 7. 24	프레시안	
7	사천시 송도근시장 간부공무원 폭염예방 실시	제17회 사천시 자연산 삼천포항 전어 축제 현장 캠페인 실시	2018. 7. 25	경남뉴스투데이	
8	사천시장, 가두리 양식장 현장 방문	사천시장, 폭염관련 가두리 양식장 방문 안전점검	2018. 8. 03	일요서울	
10	사천시, 태풍 “솔락시마론” 대비 배수펌프장 긴급점검	사천시, 태풍 “솔락시마론” 대비 배수펌프장 긴급점검(동계림프장과외개소)	2018. 08. 22	브릿지경제 포커스경제	
11	송도근사천시장 사회복지시설-군부대시설 등기관방문	안전한 사천실현을 송도근사천시장 사회복지시설-군부대시설등기관방문	2018. 09. 12	내외일보	
12	사천시, 추석맞이 교통 혼잡지 교통근무자 격려	사천시, 추석맞이 교통 혼잡지 교통근무자 격려	2018. 9. 19	사천인터넷뉴스	

사 천 시 공 보

제607호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현장홍보실적(횟수)	13	13	12	12	12
언론보도·기고실적(횟수)	8	10	11	12	12



☞ 안전한 사천실현 홍보

-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으로 재난 환경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를 위하여 매월4일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언론 보도 12회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사천실현 홍보효과 거양.
- 각종 재해 및 재난에 사전대비 훈련의 중요성을 시민이 인식할 수 있도록 재난대비 훈련에 시민, 주부민방위대, 지역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하여 지속적인 재난대비 교육 실시.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가)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1) 기본적인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기구의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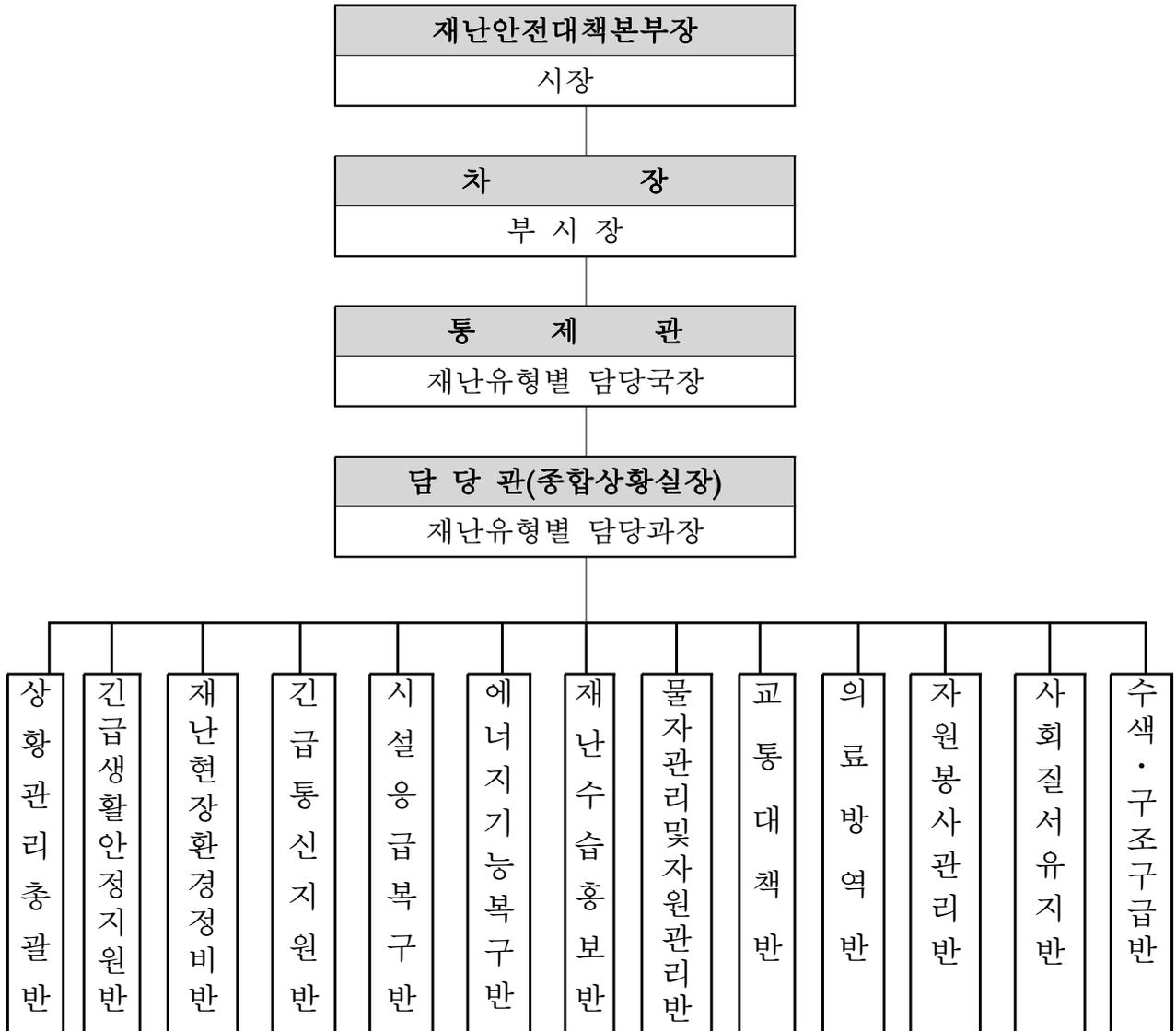
구 분	근 거	구 성	기 능
안전관리 위 원 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위원장 : 시장 -위 원 : 13명	·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 안전관리업무의 협의·조정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안전관리 실무위원회	같은 법 제11조제3항	-위원장 :부시장 -위 원 : 10명	·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재해대처계획) 심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같은 법 제16조	-본부장: 시장	·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재난안전상황실 설치·운영	같은 법 제18조		·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재난상황의 보고	같은 법 제20조		· 그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재난상황과 응급조치 및 수습내용 보고 · 시장→도지사→행정안전부 장관
재난 신고	같은 법 제19조		·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 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 · 시, 긴급 구조기관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 조직



□ 재난관리기능의 임무 및 역할

○ 상황관리 총괄 : 재난총괄담당 업무 수행(재난안전과)

* 타 기능에 대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 등 파악

○ 긴급생활 안정지원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및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이재민구호 등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주민생활지원과)
 - * 인명피해(사망·부상·실종), 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제외
- 재난현장 환경정비 : 유해화학물질, 쓰레기 등 수거·처리 지원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 * 환경 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환경정비 지원
- 긴급 통신지원 : 통신두절지역 통신시설 기반 복구(정보통신과)
 - * 통신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통신 지원
- 시설 응급복구 : 공공·사유시설 응급복구 지원(해당부서)
 - * 공공·사유시설(환경·통신·에너지·교통시설 제외) 피해현황 및 응급복구 상황 총괄
- 에너지 기능복구: 가스·전기·유류 등 국민생활 밀착형 피해시설기능 회복 지원
(지역경제과)
 - * 에너지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에너지 지원
- 재난수습 홍보 : 재난대처·수습과 관련한 각종 정보 배포·조정
(공보감사담당관)
 - * 타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언론사항 총괄관리 및 지원
-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국가 재난물자계획, 관리, 지원 및 적정상태 유지
(재난안전과)
 - * 타 기능에 대한 물자·자원(장비·자재·시설) 지원 총괄관리
- 교통대책 : 육상(육로, 항공), 해상 교통수단 지원(교통행정과)
 - * 교통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수송 지원
- 의료·방역 : 재난지역 공중보건서비스 지원(보건행정과)
 - * 의료·방역분야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관리 총괄 및 긴급(임시) 의료 지원
- 자원봉사 관리 :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주민생활지원과)
 - * 타 기능에 대한 인력(민·관·군) 지원 총괄관리
- 사회질서 유지 : 재난지역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관리(사천경찰서)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교통, 범죄, 현장통제, 안전관리, 주민보호(대피 등) 등 총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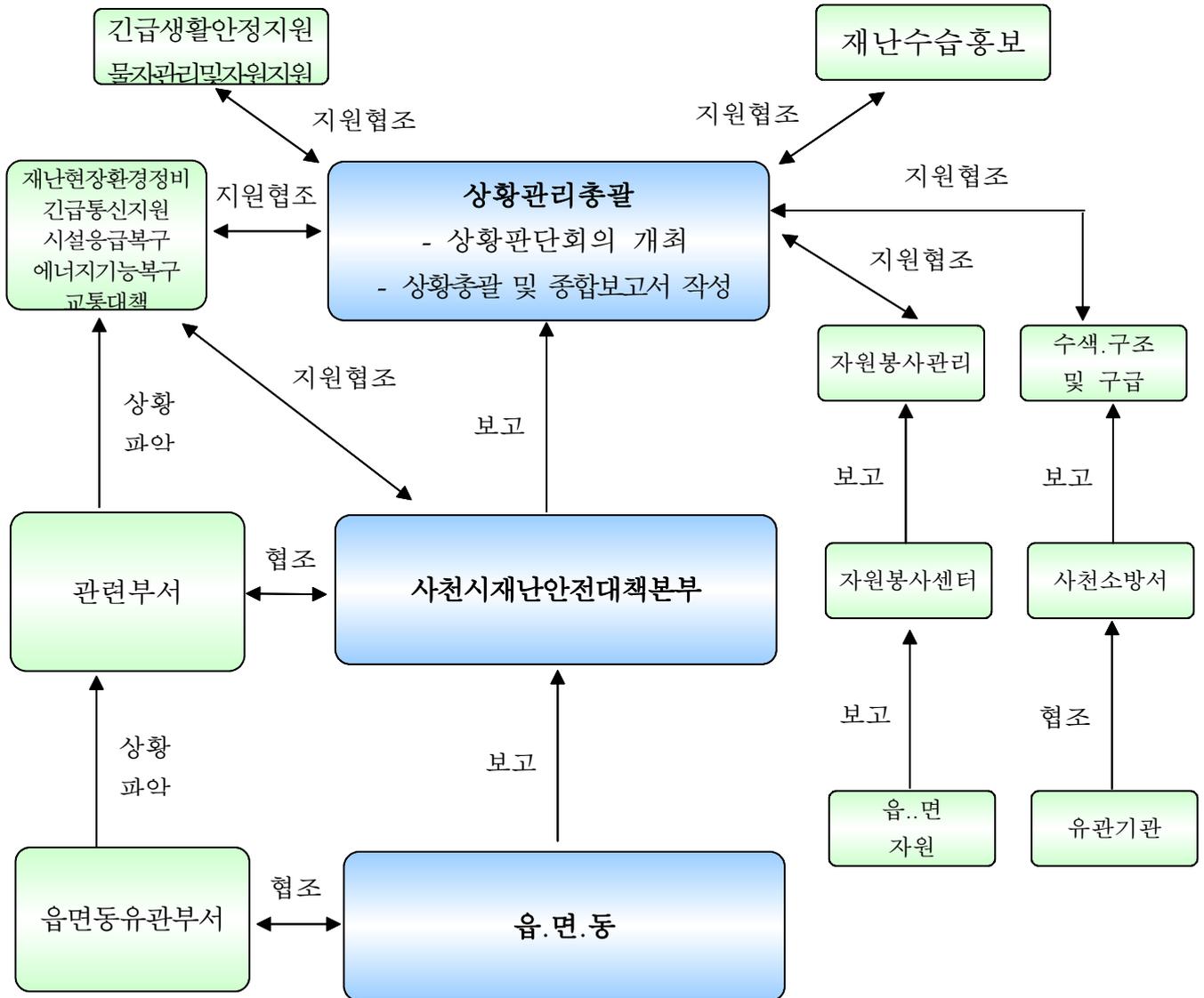
○ 수색·구조·구급 : 재난지역 구조·구급 지원(사천소방서)

* 인명구조, 응급처치, 응급운송 및 사망·실종자 수색 등 총괄관리

(2) 주요재난별 안전관리체계

[풍수해 재난]

○ 상황체계도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기 관 별	임 무 및 역 할
<p>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기상정보 및 진행상황 전파보고 ○ 상황판단회의 개최(위기경보 발령) - 종합상황실장 ○ 위기(재난)상황 전파 및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근무 실시 요청·지시 ○ 위험·취약 시설물 점검 및 초동 복구 작업 준비 지시 ○ 응급구호 및 이재민 수용 준비 지시 ○ 긴급구조기관 비상근무체제 확립 지시 ○ 피해지역 현지상황 및 진행상황 파악 ○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 긴급구조통제단 구성 및 운영 ○ 피해상황 파악 및 집계 ○ 응급복구 및 2차 피해우려지역 긴급조치 지시 ○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인력·장비 지원 협조 요청 ○ 응급복구 현황 파악 및 최종 피해현황 파악
<p>재난안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대비 소관시설물 사전점검·확인 ○ 비상연락망 구축 및 비상근무태세 유지 ○ 읍면·동 및 유관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시행 ○ 인명피해 예방 및 교통통제 지시 ○ 소관 피해시설 조사 및 응급복구대책 수립·시행 ○ 신속한 응급복구 대응체제 구축여부 확인
<p>공보감사 담당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매체를 통한 재해 예·경보 발령사항 등 재난방송국민행동요령 전파, 대국민 홍보지원 ○ 민심안정, 재난수습·복구활동 국민 참여 유도, 보도자료 작성 배포 및 재난현장 등 언론보도지원 ○ 재난상황 언론 브리핑 지원 ○ 특별지시사항 이행실태 점검 및 지도 ○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지역경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시설의 원활한 가동지원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점검 ○ 전력, 가스, 석유시설의 공급중단대비 대책 수립 ○ 주민생활 편의시설(Life-Line) 조기복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구축 ○ 전기, 가스 지원 조치
정보통신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발생지역의 응급통신대책 및 복구계획수립 ○ 재난지역 지휘통제를 위한 긴급 통신망 확보 ○ 통신두절 대비 전송선로 및 연락수단의 다원화 대책강구
교통행정과 도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시설물 피해예방대책 수립·추진 ○ 도로·철도두절 상황과약 및 응급복구실시 ○ 재난지역 교통소통 대책 추진 ○ 교통상황 안내 및 홍보, 긴급수송 운송대책 강구 ○ 태풍·호우로 인한 교통두절시 교통소통 대책
기술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 상황실운영 및 피해상황 파악보고 ○ 농경지 및 농작물의 보호와 관리 및 피해예방대책 추진 ○ 비닐하우스, 특용작물시설 등 농림시설 보호대책 조치 ○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강도 농림시설 설치 지도 ○ 태풍시 대처방법 홍보 및 교육, 농작물 복구계획수립 추진
건설수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시설물 관리책임자 현장배치 및 점검등 관리강화 ○ 저수지 및 양수장시설, 배수문 이상 유무 확인 점검 정비 ○ 용·배수로 정비 및 사면붕괴 등 피해예방대책 수립·추진 ○ 상수도 시설 등의 재해대책 강구 ○ 비상시 먹는 물 공급대책, 이재민 식수공급 등 급수계획 수립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태풍 피해지역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 강화
녹지공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휴양시설 배수로 설치 및 휴양객 대피계획 ○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우려지역 등에 예찰강화 ○ 산사태 위험지 예측정보제공 및 관리 ○ 산사태위험지 및 취약시설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 마련 ○ 산지개발지역, 절개지 등에 토사유실 방지조치 ○ 산사태 발생이 접수되었을 때 신속한 복구지원 조치
농축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시설 피해예방 및 가축보호 대책 추진 ○ 무허가 시설 집중계도 및 가축재해보험 등 가입유도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축산분뇨처리시설 운영실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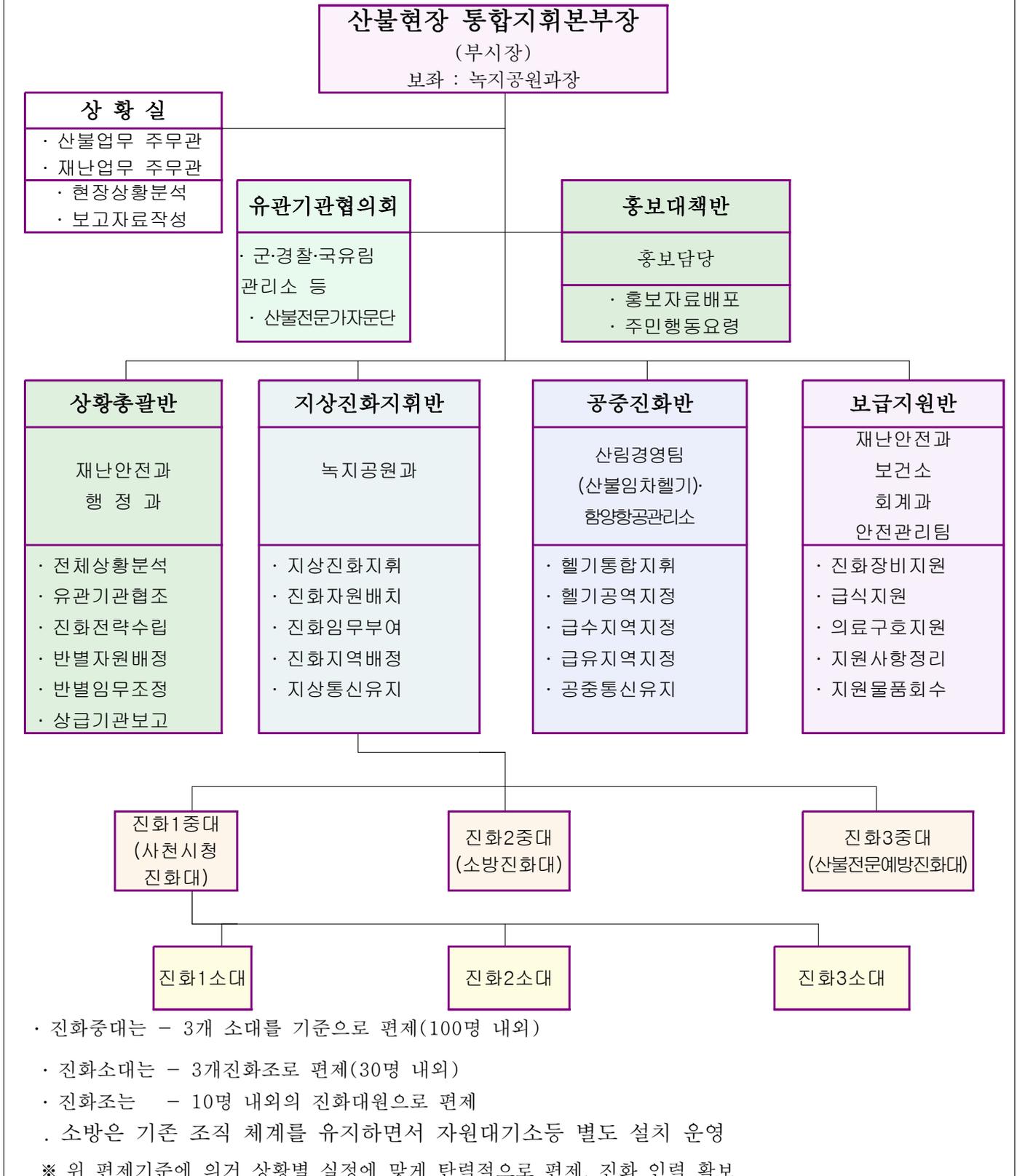
해양수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어항시설 안전여부, 내수면 증양식시설 안전점검 ○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보호 경감대책, 어장 표준설계규격 이행 철저 지도 ○ 선박 피해현황 파악 및 조치상황 점검 ○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민생활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재민 수용시설 및 재난구호 비축물자관리, 점검, 지원 ○ 이재민구호센터 운영 및 임시주거시설 관리, 지원 ○ 봉사요원(적십자 봉사대)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지역 기동의료반 편성·운영으로 진료 및 방역활동 지원 ○ 사상자 신속한 처치 및 이송 ○ 이재민 대피시설 긴급의료지원 및 재난지역 방역 조치 ○ 전염병 등 질병확산 방지대책 수립·추진 및 지역거점병원, 치료제 등 자원 확보
진주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특보, 예보, 예측정보 신속전파, 상환판단회의 (요청시)
사천교육 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휴업, 등교시간조정, 단축수업 등 응급수업대책 및 학생안전대책 추진 ○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학교 운영 및 이재민 수용 ○ 학교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조치
군부대 (육군제8962 부대4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급복구 군부대 인력·장비 동원 준비·지원 ○ 군부대 주변도로 제설 실시 ○ 교통두절 및 고립 시 헬기 등 가용수단을 활용한 구조 지원
사천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습침수구간, 피해(예상)지역등 교통통제 및 교통흐름 조정 ○ 피해지역 치안 유지 및 범죄예방 ○ 군부대, 소방서,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시행
사천소방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구조대책 수립·조정 ○ 긴급구조 및 구급업무 총괄지휘·통제 ○ 긴급구조 현장 활동계획 집행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대형 산불 재난]

○ 현장지휘 구성체계도



사 천 시 공 보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기 관 별	임 무 및 역 할
사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 직원 비상소집 ○ 전문, 지상, 특별진화대 등 출동조치 ○ 산불상황에 따른 등급별 기준에 의거 대응 조치 ○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 협조요청 ○ 기동차량, 진화도구 동원 명령 및 출동직원 인솔 현장출동 ○ 현지 지휘본부에서 진화지휘 ○ 도 대책본부상황실과 보고체제 유지 ○ 현장상황에 따라 헬기지원 요청 및 현지 인력, 장비 동원 ○ 진화대 재편성 및 뒷불감시 책임자 지정 ○ 지역재난방지 차원에서 유관기관, 단체 등 산불방지협의회 개최 정례화 ○ 각 지역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사항 면밀히 파악 공동대처 ○ 책임구역 순산 공휴일 산불조심 캠페인실시 협조 등
사천경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가해자 특히 방화혐의자 검거 및 검거사항 적극홍보 ○ 산불발생시 경찰장비(헬기 등)지원 및 교통통제 등 ○ 무단입산자 단속 및 범법자 색출 협조 ○ 경찰서, 시·군간 산불방지 협조체제 유지 강화 ○ 지·과출소 및 도서, 오지, 초소근무자에 대한 산불조심계도 및 신속 진화지도 ○ 순찰차를 이용 방화우려지, 산불 취약지 야간순찰 협조

사천교육지원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급 학교를 통한 산불조심 계도 교육 ○ 어린이 불장난 금지 지도교육 및 학생을 통한 학부모 산불조심 계도 ○ 각 급 학교에 어린이 불장난 금지에 대한 주의공문 시달 및 수시 지도(주민계도 활동 등) ○ 중고생 산림연접지 산불요인 제거사업 봉사활동 인정
8962부대 4대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예방활동 적극 지원 ○ 군 헬기 등 장비와 병력(예비군포함) 동원 진화지원 ○ 군주도 작전지역 산불 자체예방 및 책임 진화 ○ 군항공기 운행중 발견된 산불은 가까운 관제탑을 통하여 관할서 연락 ○ 사격장 주변 방화선설치 및 보수 등 예방대책 강구 ○ 사격훈련중 산불발생시 조기진화 및 부대장 책임 진화 ○ 군 작전 관련 산불피해 배상(보상) 철저 이행 ○ 산불위험 기간 중 사격훈련 중지(2~4월) ○ 산불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사전 주지
읍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장 : 유관기관 협조요청 및 민방위대, 읍면진화대, 리·동진화대 동원 출동, 인근 읍면동 지원요청 ○ 보 고 : 사천시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 특별진화대장 : 특별진화대 인솔 출동
진주기상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상관측상황 통보협조 ○ 기상예보시 산불위험주의 안내 및 주간 기상개황(예보) 통보
우 체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지대 소재 통신중계소 등에서 발견한 산불 인근 기관에 통보 ○ 집배원의 산불예방 신고 및 산불조심 계도
산림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임직원 및 리 산림계원을 산불감시 및 진화대원으로 조직 ○ 자율 운번 순찰 및 진화 유도
한려해상 관리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관리사무소 자체 산불진화대 조직 및 진화장비 확보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시 소재 해당시군과 사전 협의 ○ 산불계도 홍보물(깃발, 현수막, 안내판 등) 집중 설치 ○ 공원구역내 취약지 감시원 집중배치 ○ 입장권에 “산불조심” 계도문 삽입 및 앰프방송 ○ 공원 구역 내 산불의 책임진화체제 강구(공원, 인접 시·군 및 국유림관리소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함양국유림 관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청소관 국유림내 산불예방 및 진화전담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제 유지 ○ 입산통제구역 지정 및 등산로 조정시 소재 해당시군과 사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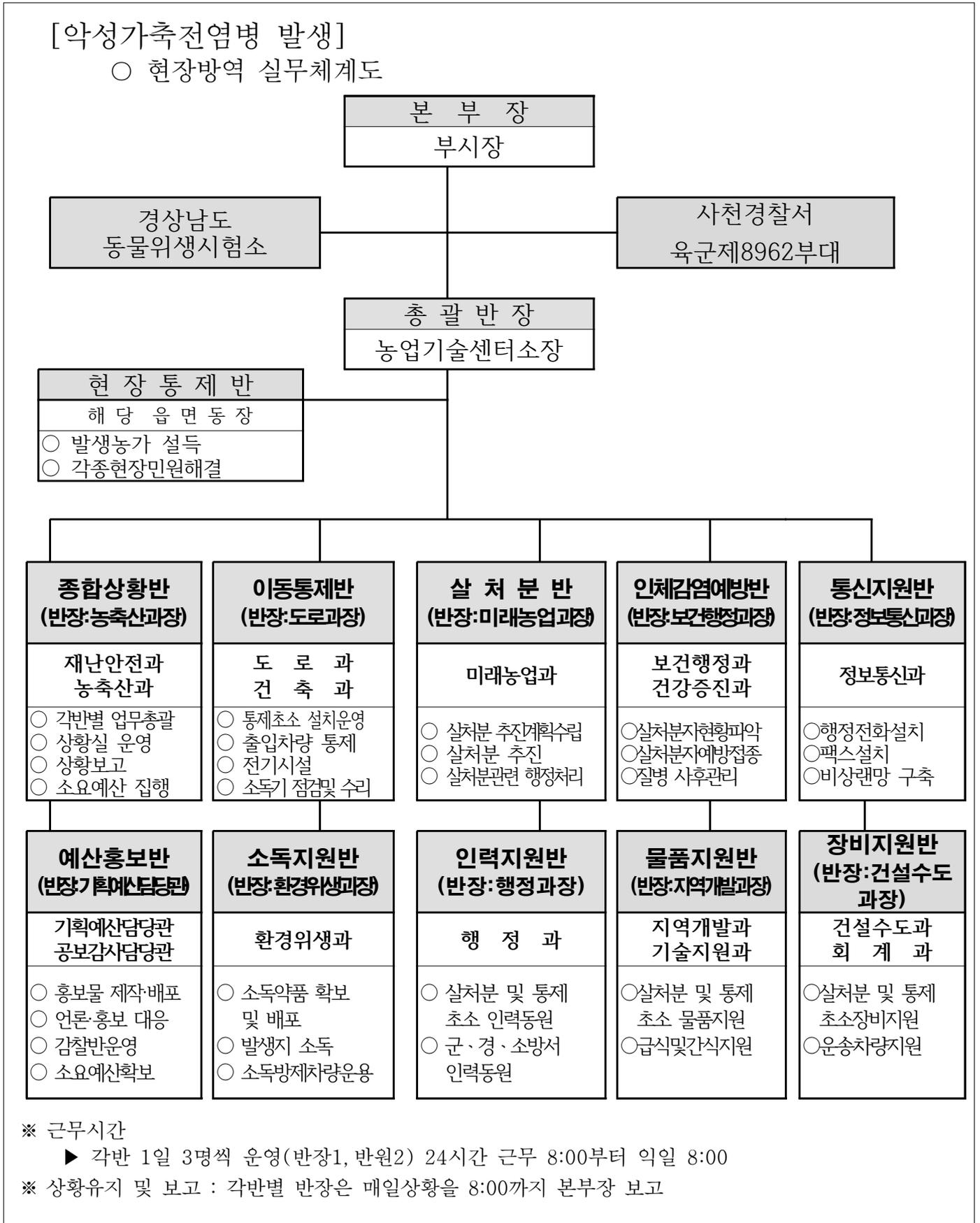
한국전력공사 경남지사	○ 고압선에 의한 산불발생 차단 및 산불발견 신고 ○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 전력 공급 협조
KT 지역별 지사	○ 산불통합지휘본부 현장 유무선 통신 협조 ○ 산불발견 신고 및 산불조심 계도
운수 및 관광회사	○ 고속,관광,시외버스 차내 및 대합실 방송이용 산불조심 계도 ○ 운행중인 차에서 담뱃불을 버리지 않도록 계도 ○ 운행중 발견된 산불은 가까운 관공서에 통보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 현장방역 실무체계도



사 천 시 공 보

제607호

○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 반별 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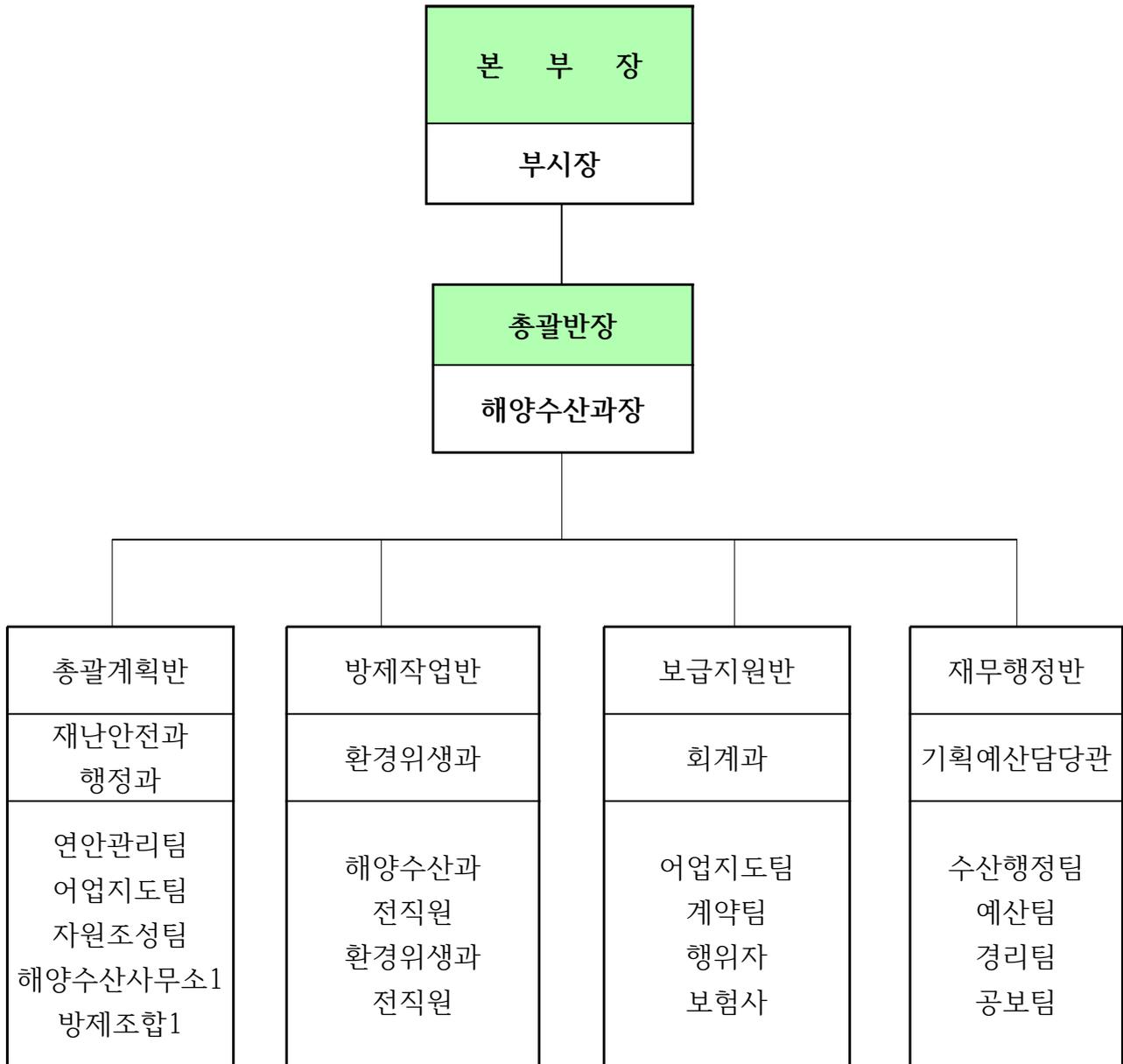
반 별	임 무
종합상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업무 총괄 및 관계기관 협조 (경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식품부 등) ○방역지대 설정 및 출입 등 이동에 관한 원칙 설정 ○발생상황별 대체요령 결정 상황전파 ○격리조치 및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위반사항 적발조치 ○각반의 방역업무 조정 및 강제폐기 살처분 매몰지 현장지휘 ○소요예산 집행종합상황보고(일일보고 등 각종보고)
이동통제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군인, 경찰, 소방서등 인력지원 요청 및 협조체제 유지 ○각 통제소 상황유지 및 보고 ○출입차량 통제 ○통제초소 설치 및 운영(컨테이너, 소독기, 그 외 비품) ○전기시설 설치, 소독기 점검 및 수리
살처분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처분 매몰 작업 실시 ○살처분 작업에 소요되는 장비, 기자재 등 수급 ○살처분 소요인력 파악 및 관리 ○살처분에 따른 행정처리(살처분 명령 등)
예산·홍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요예산 확보 ○언론기관(방송, 신문 등) 정보 총괄 ○농가 및 관련단체 홍보물 제작 배포 ○소비위축에 대비한 활성화 방안 계획 및 추진 ○농가, 단체 교육실시, 감찰반 운영
소독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독방제차량운용 ○살처분 농가 및 주변농가 소독 실시 ○소독약품 확보 및 배포
통신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화기 설치, 수리 ○팩스설치, 비상랜망 구축
물품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처분 작업에 따른 자재 운송지원 ○통제초소 소독약 및 비품지원, 급식 및 간식지원 ○각 지원반 운영에 필요한 자재 및 비품지원
장비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몰가축운반차량 지원, 이동차량 지원 ○포크레인, 스키드로더 지원 ○컨테이너, 이동식 화장실 (초소 근무조)
인력지원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처분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력계획 수립 및 지원 ○군경소방서 인력지원 요청
인체감염예방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처분 투입인원 교육 및 예방접종 실시 ○인체감염대상자 파악 및 조치 ○인체감염 사후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대규모 해양오염]

○ 현장 실무체계도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반별 임무와 역할

반별	임 무
방 제 작 업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안방제세력 총괄 행동조치 ○ 해안방제 상황 도청 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 ○ 해안현장 지휘소장이 방제 조치한 사항을 평가계획반에 통보 ○ 관계기관, 단.업체 협조 및 지원 요청 ○ 오염상황 및 해안방제 조치사항을 시차별로 기록 유지 ○ VIP 등 귀빈 방문에 대비한 상황보고 브리핑 준비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및 관계기관, 단.업체 협조지원체제 확립 ○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와 상황유지 및 정보교환 ○ 자원봉사자 작업배치 ○ 해안오염 상황도 작성 보고 ○ 주민동향 파악 ○ 해당 처리업무의 각 대책반 통보
평 가 계 획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경찰청 방제대책본부와 지원 협조체제 유지 ○ 해안특성에 적합한 방제방법 등 검토시행 ○ 방제세력 해안방제구역 설정 및 방제방법 선정 제시 등 방제계획 수립 ○ 방제기술지원단 사고현장 지원 검토 및 자문요청 ○ 유출유 표착상태 및 해안방제 진척상황에 따른 적정한 방제작업 검토 시행 ○ 해안방제지역의 교통 통제
보 급 지 원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제장비, 중장비, 기자재, 연료, 주.부식, 위생용 소모품 등의 동원.보급. 지원 총괄 관리 ○ 필요시 현장 보급지원반 및 방제기자재 임시 보급소 설치 ○ 장비, 기자재의 수습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부족이 예상되는 물품 확보 ○ 수거된 폐유, 폐기물의 임시저장소 설치 및 최종처리 적법여부 지도.감독 ○ 자원봉사자 접수 및 관리 ○ 해당 처리업무의 각 대책반 통보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반별	임 무
재 무 행 정 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예산의 방제자금 확보 및 집행 ○ 현장 방제활동상황 촬영(비디오, 디지털 카메라) ○ 보도자료 작성배부 및 보도내용 녹취, 스크랩 ○ 오보 및 비난보도사항 진상파악 시정 ○ 기자실 운영 등 취재 편의 제공 ○ 해안방제지휘본부의 사무실 운영, 방제조치 요원의 후생 등 행정지원 ○ 자원봉사자의 방제작업 배치 및 숙식 등 총괄 관리 ○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와 해안방제상황 실시간 업데이트 ○ 해안오염상황도 작성 및 해안방제상황판 기록 유지 ○ 보험가입현황 및 선주 보상능력 파악 ○ 해당 처리업무의 각 대책반 통보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나.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건명(규정명칭)	주요내용	제정일자	비고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1997.01.08	
사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1998.05.27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	2004.10.05	
사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2005.06.07	
사천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여부에 대한 심의 및 총괄조정	2005.10.25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규정	2006.02.03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6.02.03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등에 관한 조례	사천시 지역 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2006.02.03	
사천시 재난예경보 운영 규정	재난예경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2006.06.30	
사천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	2013.03.29	
사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여름철 물놀이이로부터의 안전확보 및 주민안전의식 고취	2014.2.26	
사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항 규정	2014.2.26	
사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015.12.3	
통기본 설치·운영조례 개정사항 반영	사천시 재난대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수정	2018.9.21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기반시설의 관리

시설 유형	시설명	시설현황	관리주체	지정일자	조치한 사항	비고
	해	당	없	음		

※ 관리기관에 관계없이 관할지역에 있는 국가기반시설에 대하여 공시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 재난방지시설의 정비

사 업 명	위 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계		41개소		38,714	
농업용수개발	사천시 전역	농업용 관정개발	2018. 1 ~ 12.	570	재해예방
수리시설개선	사천시 전역	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	2018. 1 ~ 12.	6,808	재해예방
산림자원조성 및 재해예방복구	사천시 전역	산림자원조성 및 재해예방복구	2018. 1 ~ 12.	2,921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사천시 전역	소하천 정비	2018. 1 ~ 12.	5,380	재해예방
풍수해보험운영	사천시 전역	풍수해보험가입	2018. 1 ~ 12	24	재해예방
재해위험지정비	사천시 전역	배수장정비 : 5개소 위험지정비 : 17개소	2018. 1 ~ 12	310	재해예방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정비	서금동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정비	2018. 1 ~ 12	6,076	재해예방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사천시 전역	신설6개소,교체3개소	2018. 1 ~ 12	615	재해예방
도로정비 자재구입	사천시 전역	제설자재 및 도로유지	2018. 1 ~ 12	50	재해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자재구입			
가축방역 약품구입	관내 (가축농가)	예방주사구제사업	2018. 1 ~ 12	1,701	재해예방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관내 (가축농가)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2018. 1 ~ 12	73	재해예방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관내 (가축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2018. 1 ~ 2	50	재해예방
가축재해보험지원	관내 (가축농가)	가축재해 보험지원	2018. 1 ~ 2	40	재해예방
축사시설 현대화	관내 (가축농가)	축사시설 현대화	2018. 1 ~ 12	38	재해예방
감염병	사천시 전역	국가예방접종사업	2018. 1 ~ 12	2,136	재해예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사천시 전역	무단횡단 방지 교통안전시설 및 LED 교통안전표지개선	2018. 1 ~ 12	1,525	안전예방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관내 (어업인)	무선전화기 설치 :34대	2018. 1 ~ 12	83.7	안전예방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사천시 전역	물탱크 교체철거, 지하수상부 보 호시설 설치	2018. 1 ~ 12	100	재해예방
가스시설개선사업	사천시 전역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2018.1 ~ 12	289	안전예방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사천시 전역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2018. 1 ~ 12	100	재해예방
어촌정주시설 확충	관내	물량장 정비	2018. 1 ~ 12	700	재해예방
산불방지대책	사천시 전역	산불예방진화인력 진화장비임차철회기	2018. 1 ~ 5	2,729	재해예방
산사태	사천시 전역	산사태예방지원단	2018. 1 ~ 12	39	
대기환경오염 예방활동	사천시 전역	환경단속장비 유지 환경오염예방 홍보 악취모니터링시스템 등유지보 수	2018. 1 ~ 12	82	환경오염 예방

사업명	위치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비 (백만원)	정비목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사천시 전역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018. 1 ~ 12	110	안전예방
여성폭력 근절사업	관내 (상당소)	성폭력상담소, 교상치료 프로그램운영	2018. 1 ~ 12	172	안전예방
CCTV 관제센터 관리 및 운영	사천시 전역	CCTV 교체 및 신설	2018. 1 ~ 12	4,511	안전예방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료 지원	사천시 (농업인)	농업인 : 6,000명	2018. 1 ~ 12	111	재해예방
어업인 재해공제 보험료 지원	사천시 (어업인)	어업인에 관한 지원	2018. 1 ~ 12	28.8	재해예방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천시 (어업인)	어업인에 관한 지원	2018. 1 ~ 12	300	재해예방
어선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사천시 (어업인)	어업인에 관한 지원	2018. 1 ~ 12	100	재해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	향촌동	대상인원:1,500명 관내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2018. 4~ 6 2018. 9~ 10	668	안전예방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사천시 전역	응급안전장비 설치	2018. 1 ~ 12	37	안전예방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천시 전역	사천시버요양원 기능보강	2018. 1 ~ 12	20	안전예방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사천시 전역	영유아 안전보험료	2018. 1 ~ 12	24	안전예방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사천시 전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비 지원	2018. 1 ~ 12	3	안전예방
청소년 보호단속 지원사업	사천시 전역	청소년 지도 활동비지원	2018. 1 ~ 12	5	안전예방
안전문화운동 추진	사천시 전역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활동비 지원	2018. 1 ~ 12	121	안전예방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천시 전역	전문관리원 활동지원 등	2018. 1 ~ 12	10	안전예방
해수욕장 안전 환경개선사업	남일대 해수욕장	해수욕장 안전 환경개선사업	2018. 1 ~ 12	35	안전예방
청소년보호사업	사천시 전역	청소년보호사업	2018. 1 ~ 12	18	안전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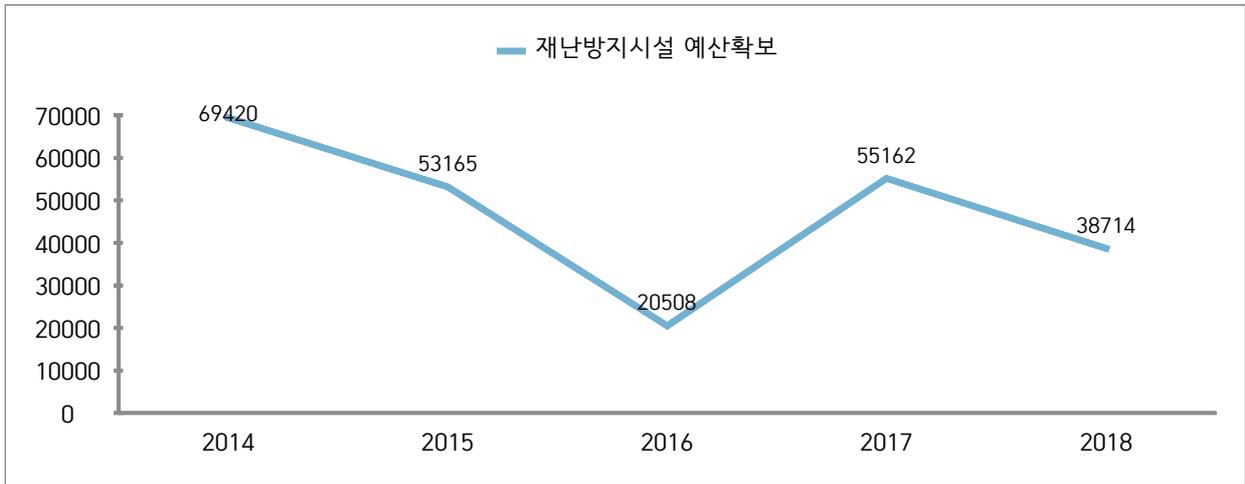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연도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난방지사설 예산확보	69,420	53,165	20,508	55,162	38,714



☞ 재난방지사설 예산확보의 증감원인

- 매년 재난에 대비하여 재해 위험지 사전 조사하고,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 정비 및 복구 등 따른 예산집행으로 증감원인 발생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및 장비·인력의 지정

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방재물자]

구분	계	오일 웬스	유흡 착제	흡착물	유차 리제	중화제	소석회	가성 소다
		km	BOX	BOX	L	kl	ton	ton
총계	87.16	0.16	27	31	29	-	-	-

[의료시설]

구 분	개소	의사	간호사	구급차	병상수	영안실
합 계	14	103	276	21	2,998	34
병 원	13	86	257	12	2,998	12
보건소	1	17	19	1		
기 타				8(소방서)		22

[수용시설]

구분	합 계		학 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기 타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개소	수용 인원
총계	73	14,431	31	12,666	25	870	15	469	1	332	1	94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지진대피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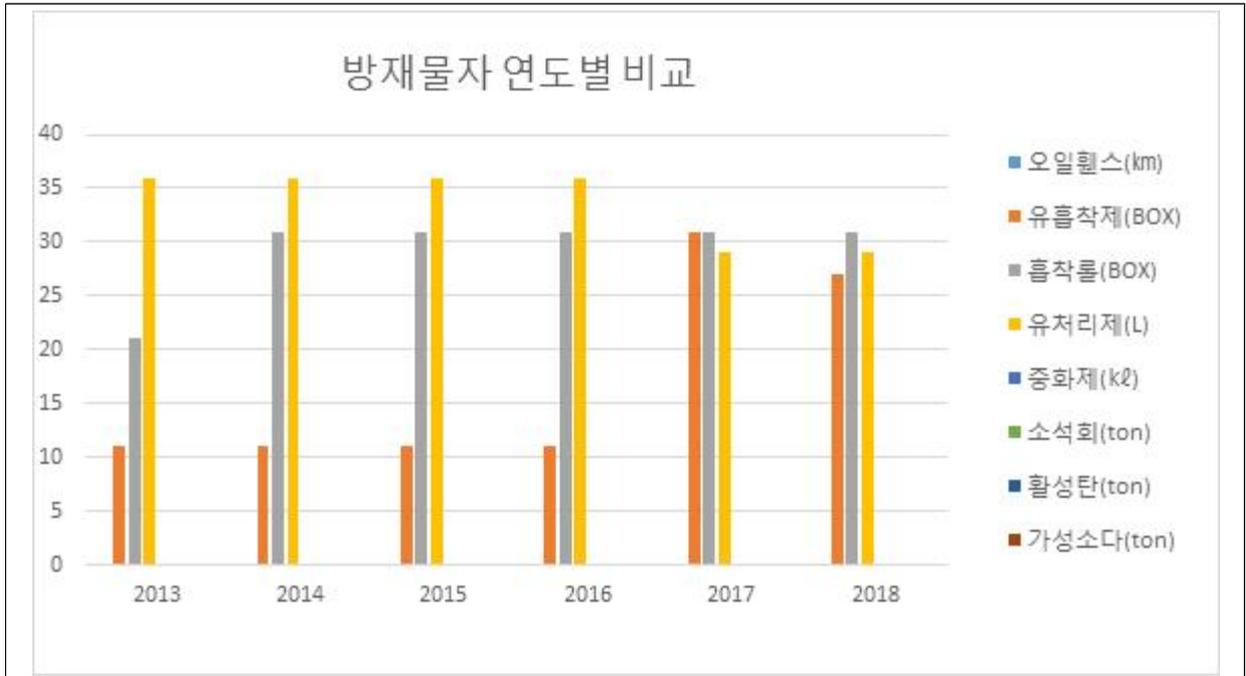
구분	합 계		학교 운동장		공원		체육시설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개소	수용인원
총계	20	69,924	16	6,381	2	51,210	2	12,333

◆ 방재물자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방재물자 종류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오일웬스(km)	0.1	0.1	0.1	0.16	0.16	0.16
유흡착제(BOX)	11	11	11	11	31	27
흡착물(BOX)	21	31	31	31	31	31
유처리제(L)	36	36	36	36	29	29
중화제(kl)	0.1	0.1				
소석회(ton)	0.2	0.2				
활성탄(ton)						
가성소다(ton)	0.1	0.1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방재물자 확보의 증감원인 등 구체적 내용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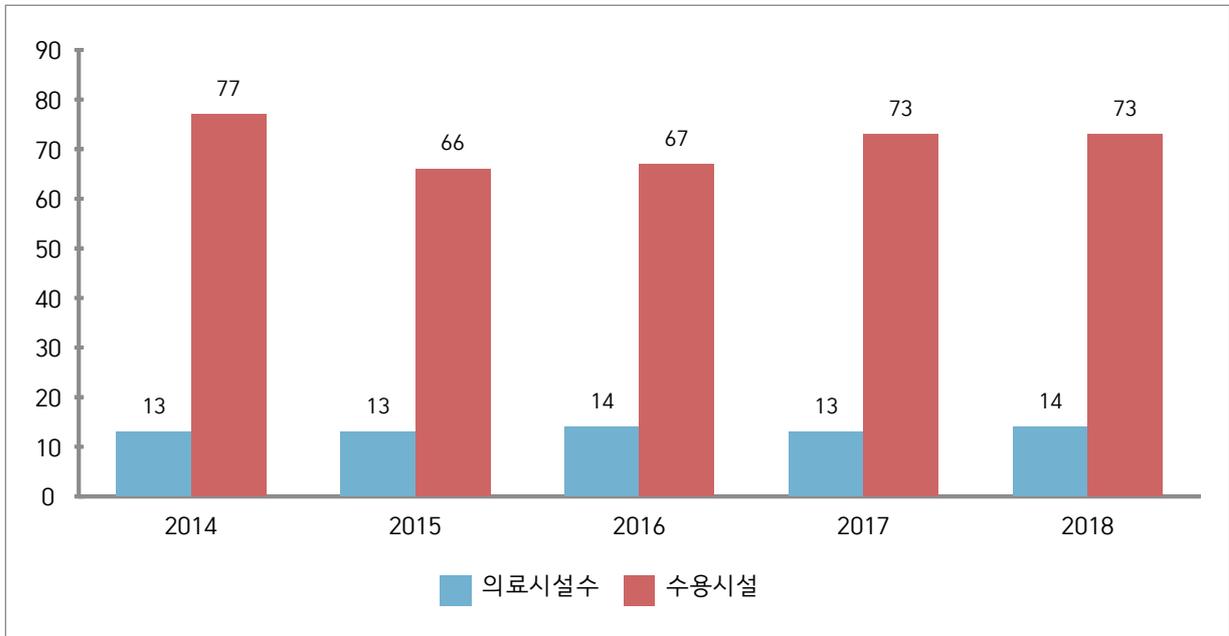
- 방제훈련 및 작업 시 사용으로 인한 유흡착제 보관량 감소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의료시설수		13	13	14	13	14
수용시설	개소	77	66	67	73	73
	수용인원	15,698	11,807	10,002	14,431	14,431



☞ 의료 및 수용시설 지정의 증감원인

- 의료시설 및 수용시설은 전년보다 수용시설 1개소 감소하였음.

나. 장비 및 인력의 지정

[장비지정]

◆ 구조·구급

구분	계	구급차	에어텐트	지게차	지브크레인	무전기
총계	390	1	0	18	11	360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복구장비

구분	계	고소 작업차	용접기	양수기	수중 펌프	엔진 펌프	전기톱	유개 트럭	크레인 붙이 트럭	케 도 형 굴착기
총계	87	4	0	0	33	34	10	2	3	1

◆ 의료방역· 재난현장 환경정비

구분	계	쓰레기수거용 트럭	압력 또는 증기청소기	가스마스크	오염제거기
총계	5,187	25	3	4,941	218

◆ 제설

구분	계	덤프	스키드로더	굴삭기	살포기	트럭
총계	9	2	0	1	4	2

※제설도구 212점(제설삼등)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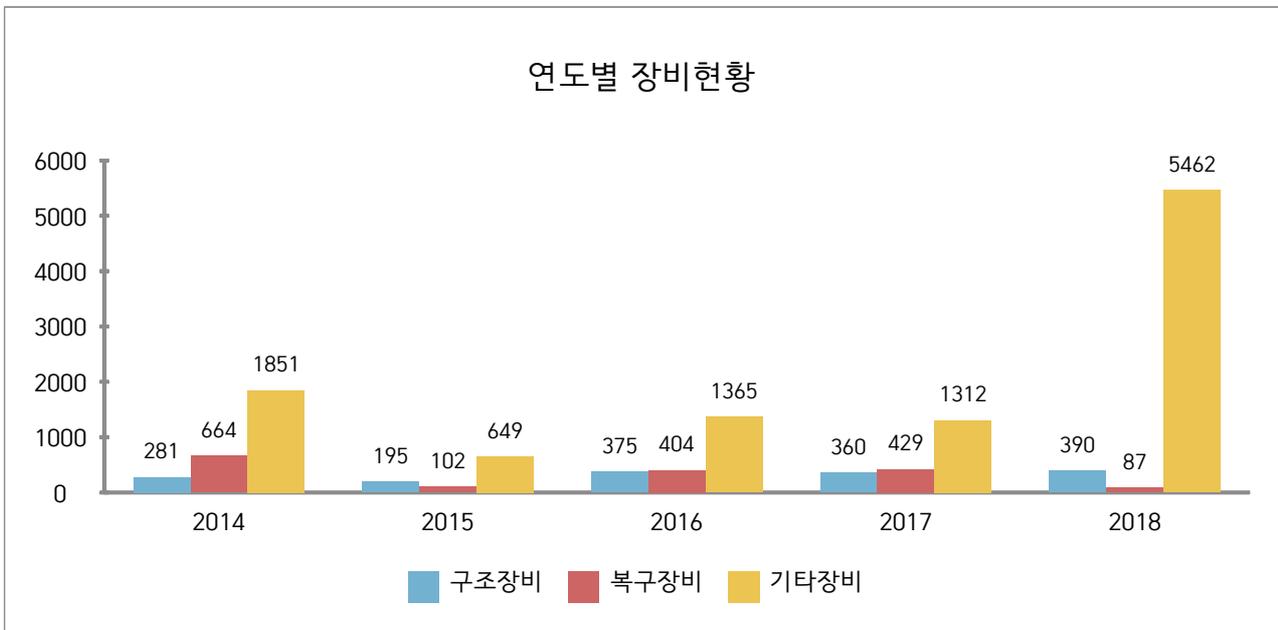
구분	계	등짐 펌프	소방용 펌프	지브 크레인	유개트럭	탱크 트럭	유압구조 장비셀
총계	194	165	10	10	2	7	0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구조장비	281	195	375	360	390
복구장비	664	102	404	429	87
기타장비	1,851	649	1,365	1,312	5,462



☞ 장비지정의 증감원인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관리해 오던 재난관리자원을 2018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을 활용하여 장비와 자재만 별도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시스템상 관리 구분이나 분류의 방법이 변경되었고 장비를 현행화 시키는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음.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인력지정]

◆ 기술인력

구분	계	토목	건축	환경	전기	가스	통신	화공	기타
인원 (명)	232	70	67	27	43	8	8	4	5

◆ 기능인력

구분	계	전기 공	기계 공	통신 공	중기 운전	중기 정비	배관 공	승강 기안 전	항공 기정 비	기타	비고
인원	700	46	7	9	380	223	12	1	8	14	

◆ 자원봉사단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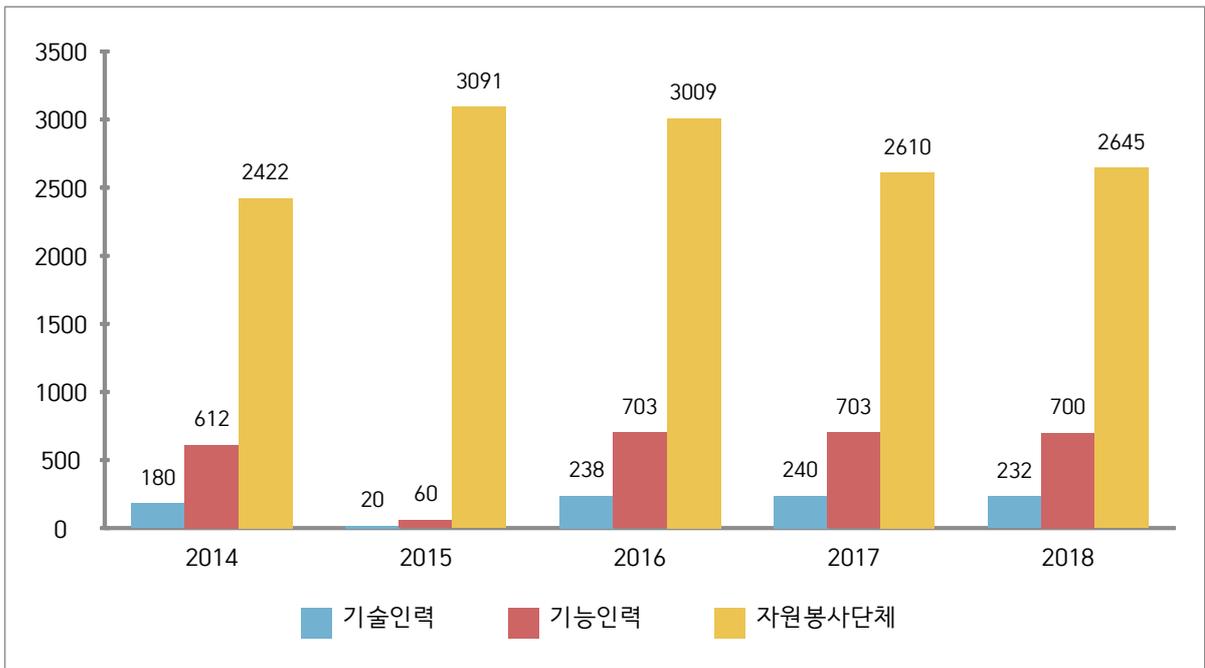
구분	계	봉 사 단 체							기 타		
		적십 자봉 사대	새마 을부 녀회	해병 전우 회	모범 운전 자회	새협 마의 을회	자원 봉사 회	여성 협의 회	의용 소방 대	자율 방재 단	시민 안전 봉사 대
인원	2,645	398	322	89	131	295	942	16	196	80	176

◆ 연도별 비교

구 분	2014	2014	2016	2016	2018
기술인력	180	20	238	240	232
기능인력	612	60	703	703	700
자원봉사단체, 특수단체 등	2,422	3,091	3,009	2,610	2,645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인력지정의 증감원인

-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욕구 증가로 재난관련 장비 지속적인 증가

(9)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가.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점검·평가 결과

- 대상 : 재난관리 실태점검, 소화천정비, 여름철 물놀이 실태 확인, 수해복구사업 추진, 재해구호물자, 폭염대비 등

- 점검·평가 결과

점검·평가 명	점검·평가일시	점검·평가 주관기관	점검·평가 결과	비고
'18 안전한국훈련	2018. 5.31.	행정안전부	우수	
'18 재난관리자원	2018.11.10	행정안전부	우수	
'18 지역안전도 진단	2018. 10. 16	행정안전부	4등급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나.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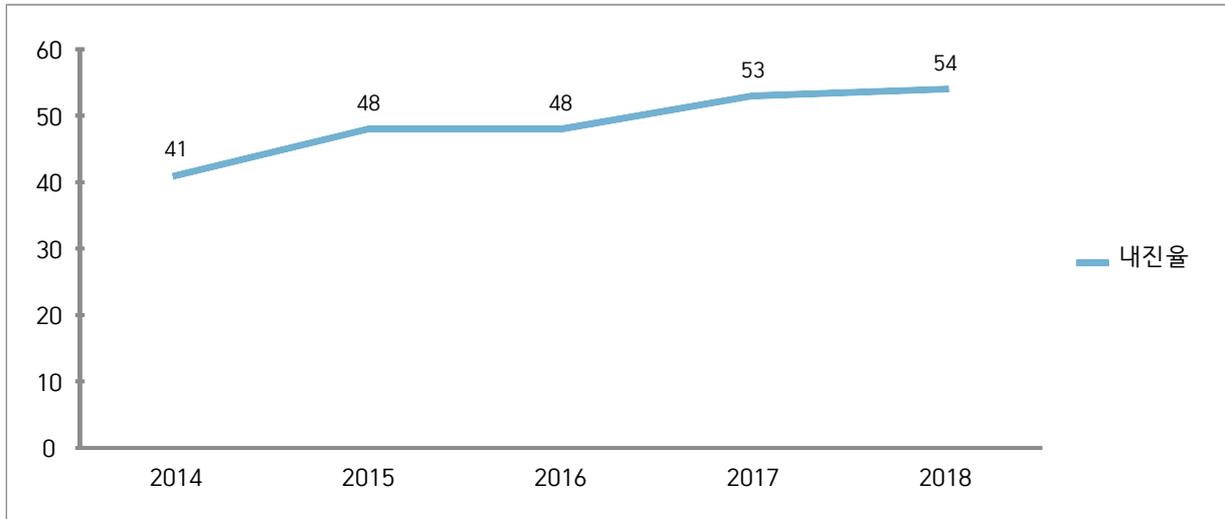
시설물별	내진설계대상① (동수, 시설물수)	내진설계 적용 +내진성능확보 +내진보강 실적 ② (전년도까지)	2018 내진보강 실적		내진율(%) $(\text{②}+\text{③})/\text{①}\times 100$
			동수(시설수) ③	투 자 사업비 (백만원)	
계	149	81	2	53	54%
공공건축물	37	26	2	53	70%
도로시설물	74	35			47%
수도시설	18	7			39%
폐 기 물 매립시설	2	2			100%
공공하수 처리시설	5	5			100%
병원시설	13	6			46%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내진율	41%	48%	48%	53%	54%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 내진실적 및 내진율 등이 저조한 사유

- 많은 예산 소요되는 사업으로 단기간 내진보강사업 추진 곤란
- 2018년에는 선구동사무소의 1개소에 내진보강 용역 실시하였음.

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종합상황실 내진대책 추진

구 분	구조체 내진 보강 여부	지대본·상황실		비고
		바닥 이중마루 보강 여부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 면진테이블 설치 여부	
지역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보강	보강	설치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라.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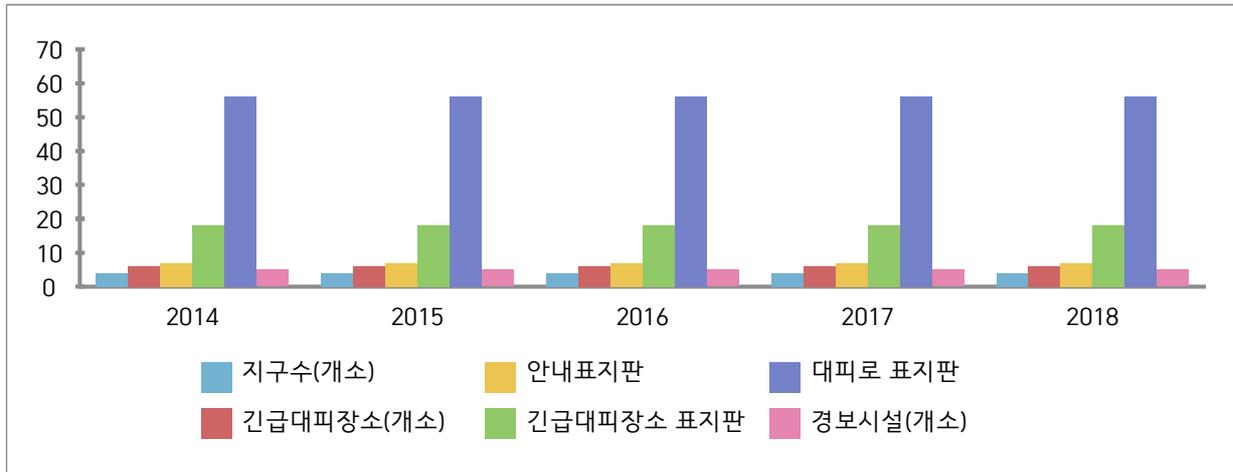
지 구 별	긴 급 대피장소 (개소)	표지판(개)				경 보 시스템 (개소)
		계	안 내 표지판	대피장소 표 지 판	대피로 표지판	
계	7개소	86	7	18	56	5
동서금동 팔포해안 상가지구	노산초등학교 (1개소)	25	2	6	15	2
향촌동 남일대해수욕장 상가지구	모레마을회관 (1개소)	14	1	3	9	1
동서동 서부해안 상가지구	성결교회, 동서어린이 집, 대방초등학교, 삼천 포초등학교(4개소)	41	3	7	30	1
동서동 신수동 지구	신수도초등분교 (1개소)	6	1	2	2	1

◆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지정 및 관리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정비 사업비 집행실적(천원)		-	-	-	-	-
지구수(개소)		4	4	4	4	4
긴급대피장소(개소)		6	6	6	6	6
표 지 판	안내표지판	7	7	7	7	7
	긴급대피장소 표지판	18	18	18	18	18
	대피로 표지판	56	56	56	56	56
경보시설(개소)		5	5	5	5	5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 현황

[재난관리기금 적립]

법정적립기준	당해연도 확보기준액(①)	확보액(②)	확보율 (①/②×100)
618백만원	618백만원	3,400백만원	

◆ 연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단위:백만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확 보 액		1,813	2,504	2,905	2,532	3,002	3,400
사 용 액	소 계	546	626	980	1,130	671	1,115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13	40	98	248	82	46
	재해저감시설설치 및 보수보강	531	571	600	882	589	995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2	15				74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282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 재난관리기금 확보 및 사용액의 증감원인

- 재난영상 전광판설치를 위해 사업비(5억원)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 제일호 전복에 따른 재대본 운영비, 폭염 대응 사업비, 제설제 구입, 지진옥외대피 안내표지판 제작
- 집중호우로 각산터널 입구 사면 토사 유출에 따른 응급복구비 지출

④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작성·운용 현황

[사천시 행동매뉴얼 작성·운용 등 총괄 현황]

구 분	관 리 번 호
자연재난	자연재난-01. 풍수해
	자연재난-02. 산사태
	자연재난-03. 가뭄
	자연재난-04. 지진대책
	자연재난-05. 조류(조수·적조)
	자연재난-06. 황사
	자연재난-07. 대설(한파)
	자연재난-08. 폭염
	자연재난-09. 대형 화산
사회재난	사회재난-01. 산불
	사회재난-02.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사회재난-03. 대규모 수질오염
	사회재난-04. 대규모 해양오염
	사회재난-05.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사회재난-06. 해양선박사고
	사회재난-07. 사업장대규모 인적사고
	사회재난-08.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사회재난-09. 가축질병
	사회재난-10. 감염병
	사회재난-11. 전력
	사회재난-12. 보건의료
	사회재난-13. 식용수
	사회재난-14. 육상화물운송
	사회재난-15. 항공기사고
	사회재난-16. 댐붕괴사고
	사회재난-17. 교량·도로 터널
	사회재난-18. 하수도 시설물 사고문화재
주요상황	주요상황-01. 취약계층(아동 학생등)
	주요상황-02. 도로터널
	주요상황-03. 문화재
	주요상황-04. 체육시설
	주요상황-05. 어린이놀이시설
	주요상황-06. 승강기 사고
	주요상황-07. 물놀이 안전
	주요상황-08.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고
	주요상황-09. 사회복지시설
	주요상황-10. 축제안전관리
	주요상황-11. 대규모사업장 인적사고
	주요상황-12. 산업단지 사고
	주요상황-13. 청소년 수련시설
	주요상황-14. 분화시설 공연장
	주요상황-15. 저수지 안전사고
	주요상황-16. 시장·상가 사고
	주요상황-17. 가정·성·학교폭력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사천시 행동매뉴얼 개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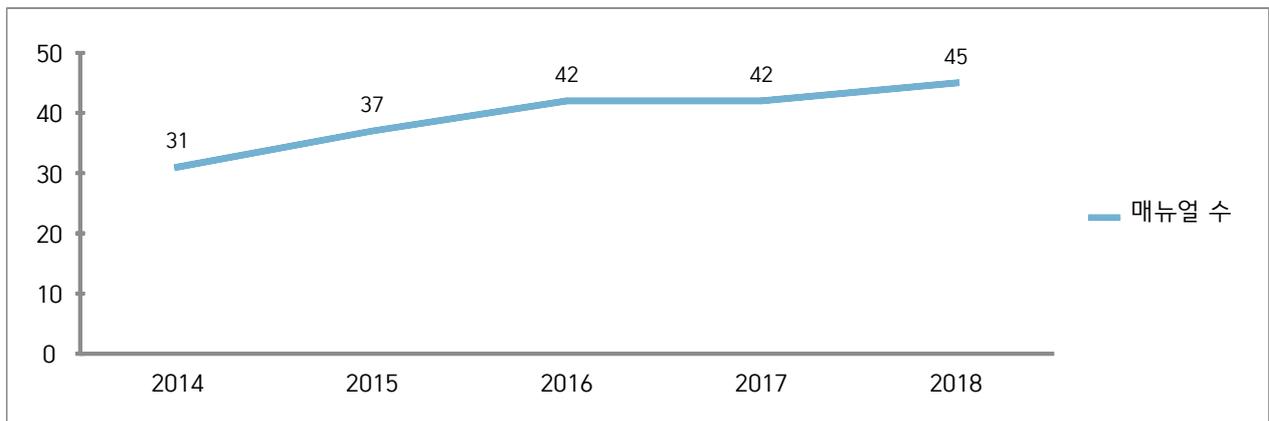
행동매뉴얼 명	개정일자	주요 개정내용	비고
대형화산폭발위기관리 대응행동 매뉴얼	2018.1.18	대형화산폭발위기관리대응행동 매뉴얼 일부개정 (국민행동요령등 추가)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현장조치 매뉴얼	2018.3.05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현장조치 매뉴얼 전부 개정	

[사천시 행동매뉴얼 숙달 훈련 실시 현황]

행동매뉴얼 명	훈련일시	주요 훈련내용	훈련결과 개선내용	비고
항공기사고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2018. 5. 18	- 기관대응수칙 성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임무, 역할 인식	- 현장 훈련을 통하여 협업반별, 유관 기관 등 대응상황 토론 및 현실적인 시나리오 작성	

◆ 년도별 비교(도표, 그래프 등)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매뉴얼 수	31	37	42	42	45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이 매뉴얼은 2017년 행정안전부·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수칙을

사 천 시 공 보

제 607 호

마련하고,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정한 바 있으며.

- 우리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대응 프로세스별 행동절차 위주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선 중에 있습니다.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진단분야별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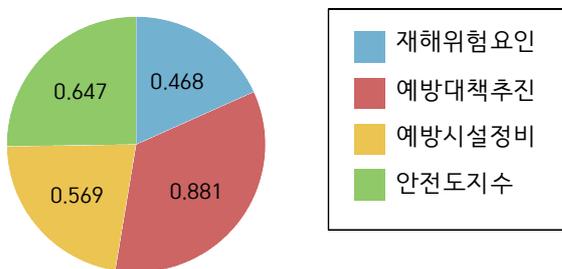
구 분	재해위험요인	예방대책추진	예방시설정비	안전도지수	등급(그룹)
진단결과	0.392	1.004	0.680	0.506	4

* (안전) 1등급/그룹 '가' <-----> 10등급/그룹 '마'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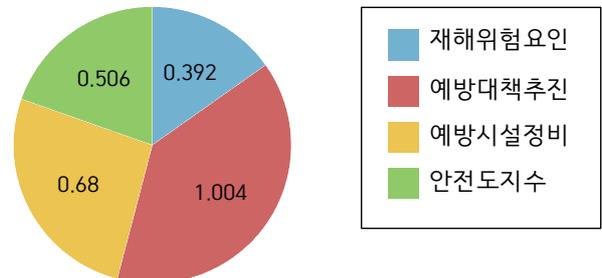
◆ 년도별 등급 비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등 급	9	10	6	6	4

2017년 진단결과



2018년 진단결과



☞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등급의 증감원인

- 재해위험요인 및 예방대책추진에서 작년대비 우수한 성적을 받음
[2017년도 6등급→2018년 4등급]
- 3등급이상 상승시 향후 재난발생시 국비추가지원(1%) 인센티브

사 천 시 공 보

제 607호

⑥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역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1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진대비) 중앙평가 결과 “A등급”을 받았음.

☞ ‘18. 2. 5. ~ 4. 13.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대대적 안전진단을 추진하였음.

점검대상은 공공시설 712개소, 민간시설 835개소로 총 1,547개소이며, 14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하였고, 보수·보강대상 42개소는 5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 보강조치 할 계획임.

☞ ‘18. 10. 16~ 12. 03일간 전국 228개 시·군·구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4등급”을 받았음

♣ 공시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 제출은 사천시 재난안전과 (담당자 : 백광부, 전화 : 055-831-3301)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